이채널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목 차

목차	페이지
Ⅰ. CP의 개요	
1. CP란? 1.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12
2. 공정거래법과 CP 관련 규정 2.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법령 2.2 CP 관련 규정	16
3. 이채널 CP 소개 3.1 조직도 3.2 CP 조직 역할 및 운영	35
4. 공정거래와 이채널의 임무 4.1 이채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의무 4.2 이채널 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38
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2 유형 1.3 제재기준 1.4 FAQ 1.5 행동지침 CHECK LIST	41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1 불공정거래행위	51
2.2 유형 2.3 제재기준 2.4 FAQ 2.5 행동지침 CHECK LIST	52

목차	페이지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3.1 부당한 공동행위 3.2 제재기준 3.3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3.4 FAQ 3.5 행동지침 CHECK LIST	73
4.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4.1 부당지원행위 4.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4.3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구분 4.4 제재기준 4.5 FAQ 4.6 행동지침 CHECK LIST	102
5. 기업결합의 제한 5.1 기업결합 5.2 유형 5.3 기업결합신고 5.4 기업결합의 심사 5.5 제재기준 5.6 FAQ	122
7. 재판매가격유지행위 7.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7.2 제재기준 7.3 FAQ	134
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 1.2 주요개념	139

목차	페이지
2.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2.1 명시의무 2.2 설명의무	145
3. 약관 해석의 원칙 3.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3.2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3.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4 축소해석의 원칙	149
4. 불공정약관 4.1 일반원칙 4.2 면책조항의 금지 4.3 손해배상액의 예정 4.4 계약의 해제·해지 4.5 채무의 이행 4.6 고객의 권익보호 4.7 의사표시의 의제 4.8 대리인의 책임가중 4.9 소제기의 금지 등	154
5. 위반 시 효과 5.1 불공정약관의 효력 5.2 일부 무효의 특칙 5.3 무효조항에 대한 보충 5.4 제재기준	186
6. FAQ	189
7. 행동지침 CHECK LIST	193
Ⅳ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 1.2 주요개념	

목차	페이지
1.3 적용대상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8
2. 거래단계별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 2.1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 2.2 하도급계약 이행단계 2.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204
3. 제재기준	246
4. FAQ	248
5. 행동지침 CHECK LIST	253
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주요개념	258
2. 사업자의 의무 2.1 전자문서의 활용 2.2 거래기록 보존의무 2.3 조작 실수 등 방지 의무 2.4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의무 2.5 공정한 소비자 정보 수집 및 이용의무 2.6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2.7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2.8 청약 확인의무 2.9 상품 공급 관련의무 2.10 금지행위 2.1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2.12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의무	261
3. 제재기준	282
4.FAQ	286
5. 행동지침 CHECK LIST	288

목차	페이지
Ⅵ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 1.2 주요개념 1.3 적용대상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3
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2.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2 기만적인 표시·광고 2.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2.4 비방적인 표시·광고 2.5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296
3. 제재기준	305
4.FAQ	307
5. 행동지침 CHECK LIST	309

이채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언문

오늘날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경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 이념으로서 현재는 중소기업과, 정부조직 등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민간기관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의 이윤을 잃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한다. 그러나 평판을 잃는 것엔 조금의 관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에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고 초기 구축에 소요 되는 비용 또한 적지 않지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는 대가는 더 큽니다.

이채널은는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직원이 내부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CP 등급 주요 평가 요소, 즉 준법의지 천명, CP운영 지원, 교육,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시스템 도입 등은 사전에 법 위반을 예

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리스크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당국과 법원은 경영진의 준법감시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자의 명확한 지시가 있을 때 책임을 인정했지만 최근 판례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됨에도 내부통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소속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행위자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상시 관련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셋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할 때 생기는 혜택 때문입니다. 먼저 공정위의 직권 현장조사가 2년간 면제되고, 과징금의 20% 감경되며 공표명령이 축소됩니다.

또한 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채널은는 CP 도입·평가에서 더 나아가 이를 내재화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이는 신뢰와 명성,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얻게 될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운영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때 비로소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이채널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문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및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법과 원칙의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준법경영을 실천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한 층 더 강화하고, 준법과 윤리를 기업문화의 뿌리로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실천 의지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 임직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어떠한 부정행위와 불공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임직원 모두가 준법경영의 주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생활화하겠습니다.

넷째,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해 잠재적인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섯째,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생 성장하겠습니다.

경영진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선언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회사의 경쟁력과 사회적 신뢰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기업, 책임을 다하는 기업,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이채널 대표이사

이 정 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

나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 첫째, 나는 자율적인 준법 실천 의지가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국내외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 둘째, 나는 회사의 준법경영 실천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반부패 환경 조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셋째, 나는 협력업체와의 정당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동반자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함

I. CP의 개요

1. CP란?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의 개념

-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을 가리킨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한다.

- CP 운영의 목적

- 경쟁력과 공정거래능력을 강화

  ✓ CP 운영을 통하여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면, 과징금 등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질 뿐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 등으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CP 운영을 통하여 법 위반에 따른 이러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감경

  ✓ 만일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CP평가등급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공정거래법과 CP 관련 규정

2.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법령

유형		내용
경쟁 및 기업거래 정책 관련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등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반품금지 등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발주자 의무사항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 허위정보제공 금지 등 가맹본부 의무 및 금지사항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조정 등
	대리점법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조정 등
소비자 정책 관련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권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원(분쟁조정), 소비자 단체 등
	표시광고법	부당표시광고 금지, 광고실증제, 중요정보고시 등
	약관법	불공정약관 금지, 표준약관, 약관의 설명 고지의무 등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규제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권익의 보호 등
	할부거래법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

		소비자권익의 보호 등
	생협법	생활협동조합활동 등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피해자 보호 등

2.2 CP 관련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51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21.] [대통령령 제34569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이하 "공정거래자율준수"라 한다)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 정도
2. 공정거래자율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가.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운영
   나. 위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의 구축·운영
   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교육
   라.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편람의 작성 및 활용
   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관리자 임명 등 인사제도의 운영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 및 그 평가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일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5항에 따라 기업의 규모, 종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세부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 매체 수 등 축소의 세부기준, 제5항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6. 11.]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평가

2.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접수

3.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절차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1.]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5.4.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3호, 2025. 4.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CP 운영실적 등을[별표 2]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기업별 또는 기관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위원"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6.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2개년도 이상 연속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CP의 도입 요건)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제4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법 시행령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설명회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한 업무

제6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③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의해 위촉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 과정에서 부정·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평가위원의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평가심의위원회) ① 평가기관은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과장과 평가위원 중 5인 이내로 평가기관의 장이 선임한다.

④ 평가심의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5조의 평가등급의 결정
2. 제18조의 등급조정 및 등급무효의 결정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 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 평가심의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⑧ 평가기관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및 등급 부여

제10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비용) 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부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평가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평가등급)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3등급(AAA, AA, A)으로 하여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한다.

등 급	평 가 점 수	정의
AAA	90이상~100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AA	80이상~90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A	70이상 80미만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제14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이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위원이 확인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평가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평가)	○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대면평가)	○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준수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이 대면평가
3단계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대면평가 결과와 실제 일치하는 지 여부 등을 평가

③ 평가기관은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평가심의위원회 등급결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하며,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개 조치만을 적용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조치 건별로 5점을 감점한다. 단,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포함)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평가등급의 결 정)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등 통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등급하향 등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등급 유효 기간)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신청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제18조(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에게 유효기간 내에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
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CP 모범 운영 기업 등에 대한 혜택

제19조(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2. A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1. AA : 100분의 10 이내
2. AAA : 100분의 15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경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 등이 유효한 등급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등급에 대하여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직권조사 면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A : 1년 6개월
2. AAA : 2년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표창)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증 수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등급이 등급외로 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23조(평가증 재발급)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등급외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5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세부운영규정)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의 부칙, 별표, 별지의 내용은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 이채널 CP소개

3.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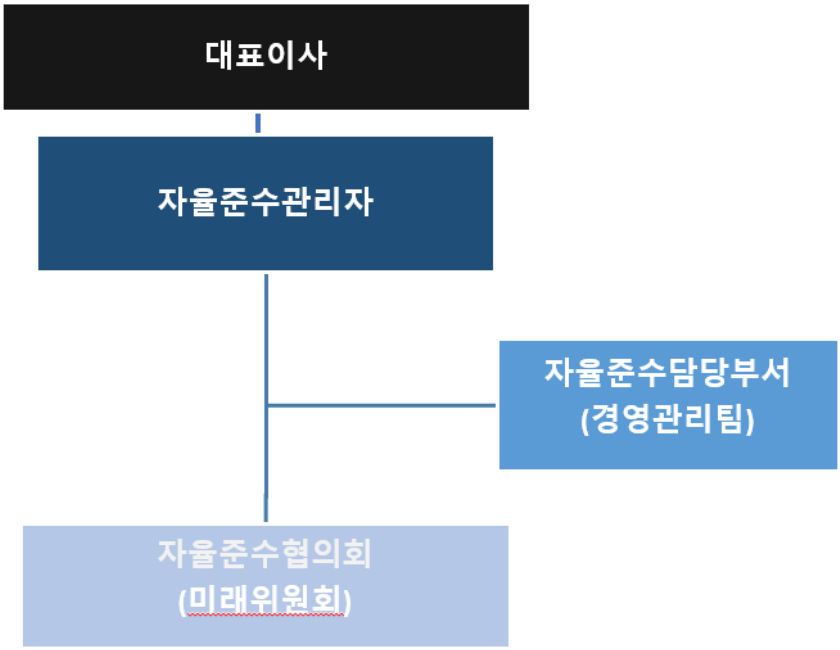

자율준수관리자

성명	선임일	직책	전화	이메일
이정화	2025.03.13	대표이사	070-8145-3252	ljh10@tcast.tv

자율준수 주관부서

성명	직책	소속	전화	이메일
박봉한	팀장	경영관리팀	070-8145-3148	bhpark@tcast.tv

3.2 CP 조직 역할 및 운영

- 대표이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운영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하고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자율준수가 기업의 핵심 가치임을 보장하고, 자율준수관리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보고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CP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나 CP 기준에 위반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준수 실태 점검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 전반에 자율준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공정거래 법규 및 CP 운영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사회가 인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CP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및 협의기구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의장을 맡아 운영한다. 협의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유관 부서의 책임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이 추가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하에 특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와 통제 아래 자율준수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관련 업무의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중 회사의 CP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와 이채널의 임무

4.1 이채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의무

-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의무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단계별 및 거래상대별로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한다.

4.2 이채널 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구분	소관법령	관련부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유관부서
협력사 상생	하도급법	유관부서
소비자, 광고, 마케팅 등	• 표시광고법 • 약관규제법 • 전자상거래법	유관부서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1.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행위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문제가 된 행위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남용행위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③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함(법 제2조 제3호)
  -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함(법 제6조)

- 부당성

- 당해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요건인 독점력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고의 측면과 객관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는 당해행위가 미치는 반경쟁성을 의미함
  - ✓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결정)

1.2 유형

가격남용행위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 관련사례

01 3개 주요 제과사업자들이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써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가격남용행위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1992. 1. 15. 의결 제92-1호, 92-2호, 92-3호)

- 사실관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3개 주요 제과사업자(점유율 78.1%)는 각자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비스켓류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키면서도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음

-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위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로 판단함

출고조절행위

-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관련사례

01 출고조절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판결)

- 대법원 판단

-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업활동방해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한 행위를 사업활동방해행위로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누36129 판결)

- 사실관계

-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쇼핑몰 플랫폼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하였음

- 법원 판단

- 비교쇼핑서비스, 특히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

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따라서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함

진입방해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4호)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저해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5호)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관련사례

01 비료제조회사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를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 사실관계

- 농협중앙회가 10개 비료제조회사들에 대하여 ①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일종인 BB비료는 자신과 전속 거래하도록 하고, ② 나머지 화학비료에 대하여도 자신이 정한 대농민 공급기준가격과 달리 일반에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농협중앙회가 구매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 자신과 계약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비료를 일반에 시판할 때에는 모든 종류의 비료에 대하여 구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음

- 대법원 판단

- 원고의 행위는 경쟁사인 비료 제조회사의 영업소나 판매대리점 등을 통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시중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이 사건 구매납품계약이 체결된 기간 동안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원고는 여전히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일반 시판상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악화된 0%를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이 사건 구매납품계약에 의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를 법이 금지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판단함

1.3 제재기준

시정조치	가격인하,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법 제7조) ※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관련매출액ㅎ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8조)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법인, 개인 양벌규정 (법 제128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법 제129조)
손해배상책임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됨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법 제109조)

1.4 FAQ

Q. 사업자의 시장지배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상품의 수입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나요?
A.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자유로운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관련 상품에는 국내 생산품 외에 외국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 수입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 가능성도 고려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Q.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 거래거절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은 동일한 의미인가요?

A.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규제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의 의미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평가·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Q. 사업활동방해행위에 있어 '다른 사업자'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되나요?

A. 사업활동방해행위에 있어 '다른 사업자'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Q.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강제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강제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Q.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독점적 이익의 과도한 실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상품의 특성·행위의 성격·행위기간·시장의 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의 저해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1.5 행동지침 CHECK LIST

- ☐ 상품·용역의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히 인상하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킨 적이 있나요?

- ☐ 재고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고량을 제한한 적이 있나요?

-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한 적이 있나요?

-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조건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한 적이 있나요?

-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한 적이 있나요?

- ☐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한 적이 있나요?

- ☐ 거래상대방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상품·용역의 수량을 감축한 적이 있나요?

- ☐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나요?

- ☐ 업계 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한 적이 있나요?

- ☐ 지식재산권을 경쟁사업자의 퇴출, 신규 진입 저지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나요?

2.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45조)

2.1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②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③ 그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하여야 함
- 공정거래저해성

- 공정거래저해성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하게'와 그 의미가 동일함
-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임
  - ✓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함
  - ✓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함

2.2 유형

거래거절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기타의 거래거절(단독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자신의 독점 취급 약품의 공급을 중단한 행위를 거래거절로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5. 12. 4. 선고 94구34120 판결)

- 사실관계

- 의약품 도매상이 약품공급 입찰경쟁 상대방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적으로 공급해오던 자신의 독점 취급 약품의 공급을 중단하였음

- 법원 판단

- 원고는 원고의 독점취급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을 원고의 의도대로 유지하겠다는 경쟁저해적인 목적을 수단으로 거래거절을 한 것이고, 결국 경쟁업체로서는 거래처와의 납품계약이 해지되어 거래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어, 원고의 경쟁업체를 경쟁에서 제압 또는 배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행위를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거래처선택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판단함

02 동 거래처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을 갑자기 중단한 행위를거래거절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746 판결)

- 사실관계

- 듀폰이 자신의 모회사와 공동으로 모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 거래처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코팅재료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였음

- 대법원 판단

- 이 사건 행위는 국내 및 아시아 코팅도관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동 경쟁사업자가 다른 대체품으로 필요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경쟁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함

차별적 취급

-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 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조건 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조회사 및 외부 장의사를 통하여 장례물품을 구입할 경우 자기의 장례식장 이용료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행위를 가격차별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04. 3. 12. 의결 제2004-91호)

• 사실관계

- 장례식을 운영하는 대우의료재단이 장례를 치르려는 상주들이 장의서비스 분야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조회사 및 외부 장의사를 통하여 장례물품을 구입할 경우 자기의 장례식장 이용료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였음

•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이러한 차별행위가 상주들의 자유로운 장례물품 선택을 제한하고, 동 가격차별이 시행된 이후 같은 지역 내에서 상조회사나 외부 장의사

를 통하여 장례가 치러진 예가 단 1건도 없으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는 상조회사 등을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 행위를 가격차별행위로 판단함

02 자기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복수거래 편의점에게는 가격체계에 따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행위를 가격차별로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1993. 10. 28. 의결 제1993-241호)

- 사실관계

- 청량음료업체가 자기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편의점과는 일정량 이상 판매시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물량별 거래가격체계를 약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반면, 자기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복수거래 편의점에게는 동 가격체계에 따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함

-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거래형태에 따라 거래처별로 상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행위는 불리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복수거래업체로 하여금 동 업계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당해 거래처의 경쟁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게 될 것인 것, 이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경쟁사업자배제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법 제45조 제1

항 제3호)

-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관련사례

01 제품을 시장판매가격보다 44.0 ~ 44.5% 정도 낮은 가격으로, 총판매원가보다 5.2 ~ 14.9% 정도 낮은 가격으로 정하여 판매한 행위를 부당염매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1994. 7. 28. 의결 제1994-205호)

- 사실관계

- 자신의 생산제품인 방수시트 3개 제품을 시장판매가격보다 44.0 ~ 44.5% 정도 낮은 가격으로, 총판매원가보다 5.2~14.9% 정도 낮은 가격으로 정하여 12개 업체와 조달청에 판매하였음

- 공정위 판단

- 위 행위의 결과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염매를 실시하기 전에는 18% 수준이었으나 염매 기간 중에는 30%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음. 공정위는 이러한 염매가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02 인기 제품을 2개월 간 구입원가 984.5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390원에서 890원에 판매한 행위를 부당염매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01. 2. 14. 의결(약) 제2001-31호)

- 사실관계

- 홈플러스의 신규점포인 안산점이 약 2개월 간 코카콜라를 구입원가 984.5원/1.5L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390원/1.5L에서 890원/1.5L에 판매하였음

- 공정위 판단

- 코카콜라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고 소비자들은 통상 매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지도가 높은 코카콜라를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장기간 동안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유통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여 이들을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부당한 고객 유인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고객 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최대 36회차분까지 자신에 대한 납입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 사실관계

- 상조용역 등 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여러 상조회사와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수 고객에 대해 최대 36회차분까지 자신에 대한 납입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영업을 하였음

• 대법원 판단

-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 전반에 걸쳐 이러한 고객유인 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 회사의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른 부담은 결

국 상조용역시장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 고객들은 물론 이관할인방식에 따라 甲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고객 역시 그에 따른 직, 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고객유인 방식은 고객들이 상조용역 등의 내용과 질, 상조회사의 신뢰성 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 甲 회사의 고객유인 행위가 상조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함

02 경쟁사업자의 경영현황 등과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객관적인 검증이나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원고 제품에 비해 열등한 것과 같이 비교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 사실관계

- 사업자가 대학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에 소요되는 DMBS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구체적인 비교기준이나 객관적인 검증 또는 출처표시 없이 경쟁사의 제품과 성능에 비하여 자사의 제품이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표시하고, 경쟁사의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비교한 자료를 대학병원의 책임운영자로 내정된 자에게 제출하였음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대상이 되는 '고객'은 반드시 기존에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

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을 포함한다고 판시하며, 위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함

거래강제

-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 끼워팔기
  -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사원판매
  -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기타의 거래강제
  -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비인기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한 행

위를 끼워팔기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비인기토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인기토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듬

- 대법원 판단

- 주된 상품인 인기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종된 상품인 비인기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 이러한 연계판매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자기의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연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02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누5635 판결)

- 사실관계

- 원고가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함

- 법원 판단

- 원고는 수학 및 특목고 분야에서 최상의 지위를 갖고 있어 수강생들의 높

은 충성도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 동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학원들 중 일부 학원은 온라인 강의가 선택적 사항이라는 점을 수강생들에게 공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온라인 강의 끼워팔기 행위는 소비자효용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거래상지위남용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6호)

- 구입강제
  -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불이익제공
  -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 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극장사업자가 극장광고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한 영화표를 구매하도록 한행위를 구입강제로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9누39065 판결)

• 사실관계

- 원고가 광고영화상영 재계약 이후 영화의 예매율을 높이기 위해 극장광고업자에게 영화표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여 극장광고업자가 영화표 대금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음

• 법원 판단

- 위 영화표 구입행위의 목적, 극장광고업종에서의 통상적인 모니터 티켓 거래관행, 극장광고업자로서는 5,000만 원 상당의 영화표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영화표는 수령조차 못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극장광고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한 영화표를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함

02 협력업체들에 대해 영업목표를 할당하고 미달성시 업무위탁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로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누4748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협력업체들에 대해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 법원 판단

- 원고는 협력업체들에 대해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의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함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7호)

- 배타조건부 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자기의 거래처 중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던 일부 주류도매상들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제품의 기존 출고지를 타 출고지로 변경하고, 공급을 중단하거나 감량한 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1994. 3. 23. 의결 제1994-83호)

- 사실관계

- 소주 제조·판매업자가 예상되는 자사제품의 판매량 감소를 막기 위하여 자기의 거래처인 주류도매상 중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던 일부 주류도매상들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인기주인 A소주의 기존 출고지를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타 출고지로 변경하고, 일부 기간 중 A소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감량하였음

-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는 주류도매상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소주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거래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동종 제품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쟁저해성이 있는 것으로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02 도매상들에 대하여 지정 납품처 이외에 납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거래 정리 등의 조치를 취한 행위를 구속조건부거래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도매상들에 대하여 지정 납품처가 아닌 곳에의 납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도매상들을 적발하여 각서를 징구하거나, 경고장 발송, 거래정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대법원 판단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매상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었으므로, 이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업활동방해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 위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계획적으로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를 교사하여 타사의 직원을 유인, 채용하도록 한 행위를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으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1997. 12. 8. 의결 제1997-181호)

• 사실관계

- A가 계획적으로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를 교사하여 타사의 직원을 유인, 채용하도록 하였음

•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도록 하여 당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도록 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음

02 정산절차에 대한 사전논의 없이 출판사 및 서점에 기출고된 출판사들의서적을 일시에 전량 반품하도록 한 행위를 거래처 이전 방해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1997. 4. 12. 의결 제1997-52호)

• 사실관계

- 자신의 조합원으로서 자신과 일원화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던 2개의 출판사가 다른 출판유통기구로 거래처를 이전하고자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장부이체방식에 의한 정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에 대한 사전논의 없이 출판사 및 서점에 기출고된 출판사들의 서적을 일시에 전량 반품하도록 조치함

-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의 정상적인 거래처 이전을 방해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음

2.3 제재기준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법 제49조)
과징금	관련매출액 4% 이내 또는 10억 원 이내(법 제50조 제1항)
형사처벌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5조 제4호)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125조 제4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법 제125조 제4호)
손해배상책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됨

임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법 제109조)
금지청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08조)

2.4 FAQ

Q. 거래조건차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이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유리 또는 불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유리 또는 불리한 정도가 현저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차별취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누39165 판결).

Q.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위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Q.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와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위법성 판단의 차이가 있나요?

A.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그 행위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Q. 사원판매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단지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회사 상품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사원판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Q.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한정되나요?
A.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3두15225 판결).
Q. 구입강제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2.5 행동지침 CHECK LIST

□ 거래 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사전에 법

무부서의 검토를 거쳤나요?

- ☐ 거래조건 변경 시에는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 증빙을 남겨두었나요?

- ☐ 가격 및 공급량 산정의 근거(예: 원가 변동, 생산능력, 재고량 등)를 갖추어 두었나요?

- ☐ 경쟁사업자와의 비교(제품기능, 기술 등)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나요?

- ☐ 결합판매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예: 주된 상품의 기능 발휘, 효용 극대화, 할인판매 등)가 있는지 사전 검토하였나요?

- ☐ 배타조건부거래를 체결한 경우, 당해 상품의 특성, 비용 절감 등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자발적 요청에 의하였다는 별도 증빙이 있나요?

- ☐ 거래상대방별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에 차등을 둘 때에는 사업자별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였나요?

- ☐ 대리점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은 회사의 하위 기관이나 부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인식하고, 판매목표나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나요?

3.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법 제40조)

3.1 부당한 공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생산량 등을 기업들간의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담합 혹은 카르텔(Cartel)이라고 불림

- ① 둘 이상의 사업자가 ② 특정 행위*를 공동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③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함

*행위 유형은 69페이지 이하의 “위반유형” 참조

- 성립요건

- ① 둘 이상의 사업자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2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함

  ✓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 ② 합의

  ✓ 합의의 의의

  ■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됨

  ■ 일정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여도(내심으로는 합의에 따를 생각 없이

거짓으로 합의를 하여도) 담합이 성립할 수 있음

■ 실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되지 않아도 법 위반임

✓ 합의의 추정

■ 사업자간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위는 일정한 경우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 지라도 사업자들이 특정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가격, 생산량 등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음

(i) 합의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ii)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 ③ 부당성(경쟁제한성)

✓ 부당성은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격・산출량의 결정・제한이나 시장・고객의 할당 등)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 성격상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에는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과 수

-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시기)

  ✓ 합의일 또는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별 실행개시일

-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종기)

  ✓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의 종료일

  ✓ (i)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종료한 경우 혹은 (ii) 합의 탈퇴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실제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등이 종료일에 해당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 (i) 개별 합의들의 기본 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 합의가 있었거나 또는 (ii)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수 회의 합의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경우 등이 그러함(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등)

• 관련사례

01 유럽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일을 공동행위 종료일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 중 하나(D사)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 하였으나, 당해 자진신고일을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국내시장에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정한 대로 D사가 상권을 유지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 및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준하여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위반유형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함
  -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을 불문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공동으로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등 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 공동으로 인상율, 할인율, 할증율, 이윤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 「공동행위 심사기준」 참조

• 관련사례

01 레미콘 판매가격의 하한선 설정을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2누40491 판결, 고법 확정)

•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U지역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U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단가 대비할인율 80% 또는 90% 등 특정 수준 이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02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 인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46687 판결)

• 사실관계

- 베어링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직접 혹은 대리점을 통하여 베어링의 판매가격, 가격인상계획, 수입가격, 할인가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법원 판단

- 가격 인상 방향과 시점, 인상 폭에 관한 의사연락도 함께 주고받은 점, A사가 가격을 인상한 때로부터 한 달 정도의 근접한 시기에 C사도 비슷한 인상률로 덩달아 가격을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변동의 외형상 일치가 있었던 점 등에서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함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함

-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이

포함됨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함

-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이 포함됨

- 「공동행위 심사기준」 참조

• 관련사례

01 증정행사 중단을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4. 12. 선고 2011누27584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유제품사업자들이 우유 1,000ml 구입시 증정용 우유 200ml 1-2개를 끼워주는 덤 증정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02 무료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를 합의한 사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일부를 순차적으로 폐지, 유료화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03 판매장려금 및 위탁수수료율의 공동결정을 합의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2612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 도매시장 사업자(출하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하여 중도매인 등에게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사업자)들이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 출고 ·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 심사기준」 참조

• 관련사례

01 공장 가동시간 단축등을 통한 생산량 감축을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1누60139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 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 'PHC파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실무자협의회 등의 모임 및 상호의사연락을 통해 ① PHC파일 시장의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시황을 매월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업계 전체적인 재고량 수준을 점검하고, ② 업계 재고량이 과다하여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PHC파일 생산공장의 토요휴무제도입 및 가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생산량 감축을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02 원재료의 수입 쿼터량을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6누2300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 종계 판매업자들이, 상업용 닭의 종계(Parent Stock)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 사별 원종계(Grand Parent Stock, 종계를 생산하기 위한 닭) 수입 쿼터량 및 보유한 원종계 도태량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03 상품의 내수 반출량 비율을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6누2300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 제분사업자들이 각 사별 밀가루 내수 반출량(회사의 창고를 떠난 물량, 즉 회사의 판매량과 외부 재고량을 합친 물량)을 각사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정한 일정 비율대로 하기로 하고, 각 사의 담당 임원들이 매월 1회 만나 기준비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을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 「공동행위 심사기준」 참조

• 관련사례

01 발주처별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누66806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발주처별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응찰함으로써 사전에 정해진 낙찰예정정사가 낙찰받도록 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02 영업지역 분할에 합의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7. 의결 제2014-294호)

- 기계경비사업자들이 경남, 충남·북, 전남·북의 일부 시·군 지역 사업장 등을 서로 양도하고, 양도한 지역에서 향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영업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 「공동행위 심사기준」 참조

• 관련사례

01 예선의 추가 등록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25. 의결 제2015-393호)

- 사실관계

- 예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관할 항만청에 등록된 예선(건조 중인 예선 포함)의 대체와 마력증감을 제외하고는 추가 등록을 10년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례

• 공정위 판단

- 위 행위는 예선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사업자별 예선의 척수를 유지·결정함으로써 예선의 증선(도입)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 심사기준」 참조

• 관련사례

01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곡수와 가격 등을 합의한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Non-DRM 상품(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해제된 음원)의 가격, 곡수, 복합상품 가격, 변칙상품 출시 금지 및 신규상품의 출시일정, 체험 프로모션의 금지 등을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구체적으로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 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으로 하고,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 등을 합의함

02 설계도에서 특정 공법 및 설비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137 판결)

- 건설사들이 입찰 참가시 공동으로 특정 공법 및 설비 항목을 기본설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⑦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및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공동행위 심사기준」 참조

• 관련사례

01 LP가스 판매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30. 의결 제2016-366호)

- LP가스 판매업자들이 판매대금 관리 및 이익금 배당, 영업지역 조정, 충전대금 결제등 LP가스 판매영업의 주요부문을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구체적으로, 협회는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으로 사업자들의 LP가스 외상충전대금을 결제한 후 협회경비 등을 제하고 남은 잔액을

회원사 수로 나누어 익월 15일경에 회원사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이익금을 배당하는 방법 등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음

- 아울러,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판매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거래해왔던 지역을 각자의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자신의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스공급 요청이 오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다른 사업자의 판매소를 안내해 줌

⑧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입찰가격 등 입찰에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 판결)

- ㉮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임
- 법원나 가능성이 큰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참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누45793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사실관계

- 낙찰하한가(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입찰참가자 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1순위로 정한 뒤 별도의 적격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심사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자를 바로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서, 3개의 사업자가 각 입찰건별로 참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서로 협의한 후 입찰에 참여함

• 법원 판단

- 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않아도 3개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입찰가격으로 투찰하게 되면, 그 중 한 사업자만이라도 낙찰가격에 근접하면 되므로 경쟁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보다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수만큼 낙찰 확률이 높아지므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함

•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임
-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높은 낙찰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1누71757 판결, 고법 확정)

- 건물의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사다리를 타는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순번에 따라 낙찰 받되 합의된 입찰 외의 새로운 입찰의 경우에는 참여 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02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유찰방지를 위해 A사의 낙찰을 전제로, B사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법원은 A사가 각 입찰 때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입찰가격을 사전에 B사에게 알려 주었고, 특정 입찰의 경우 입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샘플까지 B사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였음

03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누56508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경쟁사업자 수를 감소시켜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한 후 서로 안정적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① A사는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B사와 공동수급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고 ② C사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대신 물량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㉑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발주처에 특정 조건을 요구하고 요건 미충족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누63975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전자카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들이 (i) IC칩과 플레이트를 통합된 완성품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입찰, (ii) 4개사 모두와의 동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조건을 요구하고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유찰이 되도록 유도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IC칩 공급업체는 플레이트 제조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제공받지 않는

한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국내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위 4개사(계열사 포함)가 유일한 상황이었음

- ㉱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 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임

  ✓ 입찰제도 중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서 가격 이외에 수량 등 기타의 조건으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의 내용에 따라 낙찰자 및 낙찰 가격에 추가하여 낙찰 수량 등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입찰에서 문제될 수 있음

-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모임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희망물량을 일부러 적게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투찰물량 배분에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8867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A사가

공고수량의 35%, C사가 공고수량의 65%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아래와 같은 내부문서 내 기재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됨

- '투찰 수량 및 동일단가 협의로 계약비율 배정가능'
- '조합: A 협상 구도 성립(다음 입찰 재합의 여지)'

- ㉮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임

-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참조

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제1호 내지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됨

– 「공동행위 심사기준」 참조

• 관련사례

01 특정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사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4177 판결)

•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사업자'라 한다)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02 경쟁제품의 개발 및 생산 금지에 합의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302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 신약 A의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복제약 제약사가 기출시한 당해 복제약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아울러 당해 신약 A의 복제약 뿐만 아니라 그와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성분의 복제약까지 개발·생산·판매·취급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⑩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

- 일정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일정한 정보란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말함

-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정보교환 행위)의 의미

- 우편, 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정보교환의 수단은 불문함

-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됨

-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정보교환 합의의 성립

- 묵시·암묵적 합의가 있는 경우 정보교환이 해당 정보와 관련된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체 간,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중요한 의사결정 전 이루어지거나,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사업자가 정보 수신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 송신을 신고한 경우, 정보교환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없거나 해당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판단함

-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예시

✓ 경쟁사들이 자신이 대리점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행위

✓ 경쟁사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이 단체를 통해 상호 간의 시장점유율, 제품별 판매량 및 판매시기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공동 작성하는 행위

✓ 경쟁사들이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

✓ 경쟁사들이 장기간 가격, 판매량, 출고량, 재고량 등을 대표자급 회의, 임원급 회의, 실무자급 회의 등 다양한 직급이 각각 참여한 회의를 통해 교환하고 이를 각자의 결정에 반영해 온 경우

✓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들이 매월 말 가격정보를 경쟁사들에게 통지하면 이를 통보받은 경쟁사들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우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별 원가, 재고량을 정리하여 각 구성사업자에게 공유하는 관행이 개별 사업자들의 반대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우

• 정보교환 합의의 부당성(경쟁제한성)

- 교환 정보가 과거정보 보다는 미래정보인 경우,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수록, 교환 주체가 고위급일수록, 의사결정 시점과 정보교환 시점이 가까울수록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음

-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참조

3.2 제재기준

시정조치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법 제42조)
과징금	관련매출액(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의 과징금(법 제43조)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2항)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128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법 제129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법 제109조 제2항)

3.3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 ① 공정위 조사 개시 전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자진신고자) 또는 ② 조사 개시 후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시한 자(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감면함

유형	1순위		2순위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

과징금	면제	면제	50% 감경	50% 감경
시정조치	면제	감경 또는 면제	감경 가능	감경 가능
검찰 고발	면제 (단,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조사 과정에서의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등에는 감면이 취소됨

• Amnesty Plus

- 진행중인 담합사건(A)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담합사건(B)에 대해 1순위로 리니언시 할 경우 담합(A)에 대해 추가 감면이 가능함

3.4 FAQ

Q. 다른 사업자의 가격을 단순히 따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유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므로, 직접 가격 결정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가격을 추종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Q.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의 경우(거짓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공동행위 심사지침 II. 2. 가. (2)).

Q. 공동행위를 할 사업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A. 높은 가격에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에 관한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Q. 정부의 지시나 유도에 의해서 사업자들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공동행위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주요상담사례).
특히, (i)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진 경우, (ii)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하는 등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 등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IV. 1.).

Q. 현장종료를 실시한 날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볼 수 있나요?

A.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1246 판결).

Q. 자진신고일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볼 수 있나요?

A. 적법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일 시점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가 됩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Q. 부당한 공동행위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구법, 신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개정법령 시행 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1. 11. 6. 선고 2000누11088 판결).

Q.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후단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Q. 수평적 경쟁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공동행위 참여자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3028 판결 등). 실제로 영화배급업자와 영화상영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누2483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Q. 입찰담합의 정형화된 양태는 무엇인가요?

A. 입찰담합의 정형화된 양태로는 ① 낙찰가가 경쟁입찰에 비하여 높고, ② 최고투찰률과 최저투찰률의 편차가 경쟁입찰에 비하여 작으며, ③ 입찰참여자의 수가 경쟁입찰에 비하여 많은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누27126 판결).

Q.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입찰 참여 포기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선사의 명시적인 존중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7누54025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다만,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관련사업 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낮은 기술경쟁력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3. (2)).

3.5 행동지침 CHECK LIST

☐ 경쟁사 임직원과 정기적으로 모임(협회 등 공식 모임을 포함, 이하 동일)을 가지고 있나요?

☐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서 논의될 내용을 미리 전달받지 못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모임의 참여자 및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나요?

□ 경쟁사 임직원과 접촉하는 자리에서(공식·비공식 모임, 이메일, 유선 등 형식을 불문함, 이하 동일)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경쟁사 임직원과 접촉하는 자리에서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한 채 자리를 지킨다.
■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논의가 중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킨다.
■ 경쟁사 임직원의 말에 따를 생각이 없으나 우선 동조하는 척한다.

□ 경쟁사 임직원과 접촉하는 자리에서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사실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나요?

□ 가격, 생산량, 입찰가격 등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와 교환하고 있나요? (제3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

□ 경쟁사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안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치라도 누락한 적이 있나요?

■ 경쟁사 임직원에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다.
■ 거절했다는 점을 회사 내부 문서에 기록한다.
■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회사 내부 문서를 작성할 때, 다음 중 하나의 행동을 하고 있나요?

■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재할 때, 그 출처(시장조사업체의 리포트 등)를 명시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결정이 독자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닌 경쟁사와의

합의 혹은 정보교환의 결과인 것처럼 기재한다.

- ■ “업계 공동대응” “동업사 협력 강화” “업계 공조, 협력, 시너지 창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나 유관부서에 미리 질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나요?

- ■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서 논의될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으나, 해당 논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 ■ 경쟁사 임직원으로부터 자료 제공 혹은 교환을 요청받았으나, 해당 자료의 제공 혹은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4.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47조)

4.1 부당지원행위

- 부당지원행위

- 사업자가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거래하면서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통행세 거래”)

- 성립요건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 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통행세 거래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적용제외(안전지대)

-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거래나 인력제공 행위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인력제공의 경우 인건비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위반유형

부당 자금지원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상품, 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지원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세법상 산출된 이자율을 정상금리로 인정하지 않아 부당자금지원이 인정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9. 1. 23. 의결 제2019-025호)

• 사실관계

- 지원주체는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 따라 이자율을 산출하였음

• 공정위 판단

- 법인세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법인세법을 따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상가격을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특히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은 대여주체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정상금리를 산정하므로 지원객체의 현황이 판단에 주요한 본건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시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02 발행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여 줌으로써 자금을 지원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08. 8. 20. 의결 제2008-241호)

• 사실관계

- 지원주체인 피심인은 지원객체가 발행한 사모사채 총 3,500억 원을 7회에 걸쳐 4.79%에서 5.86%의 낮은 금리로 인수하여 줌으로써 영업조치 등이 내려질 위기상태를 피하도록 하였음

• 공정위 판단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무보증사채 인수시 적용한 금리는 4.79% - 5.86%로서 지원객체의 최근 공모사채발행금리인 8.0%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이며, 신용등급이 유사한 동종업체의 채권 시가평가 기준수익률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리이므로 지원행위에 해당함

부당 자산·상품 등 지원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 발행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주식 고가매입)
- 금융관련 법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주식 우회인수)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게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무체재산권 양도)
- 지원객체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부동산 고가 임차)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용역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합리적인 비교나 고려 없이 대규모 수의계약을 유지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27. 의결 제2021-228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사내급식에 관한 직원들의 불만, 비교적 높은 가격 등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던 경쟁입찰조차 중단하며 수의계약으로 급식 계약을 유지하였음

– 특히 그룹 의사결정 조직은 복수의 가격검증을 통해 적정가격을 모색하는 것이 고객사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에도 각 사의 자체적인 가격조사를 금지하고 한국물가협회가 제공하는 단독 자료로 일부 품목의 가격만 비교하도록 함

- 공정위 판단

– 지원주체들의 행위는 사내급식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계약구조를 통해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지원행위에 해당함

02 결합판매 수수료 비용을 지원주체가 높은 비중으로 부담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 3. 18. 의결 제2021-075호)

- 사실관계

- 지원주체인 피심인은 대리점을 통해 자사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지원객체의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함
- 지원주체는 대리점에 지원객체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되, 부당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원객체의 광고매출을 올려주는 방법을 채택함

- 공정위 판단

- 결합판매의 판매 수수료는 각 상품의 가입자 1인당 요금수익에 따라 분담되어야 하나, 자의적으로 지원객체에 유리한 분담비율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함

부당 인력지원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겸직임원의 인건비를 지원주체가 모두 부담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5. 16. 의결 제2022-125호)

- 사실관계

- 겸직임원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으나, 지원객체로부터만 인건비를 지급받음

• 공정위 판단

- 대표이사 직무는 회사의 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전체 매출액 비율에 의한 분담 금액을 정상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인력지원에 해당함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통행세 거래)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특수관계인 지원 목적으로 비계열 통행기업을 섭외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9. 21. 의결

제2023-144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과거 동일인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통해 피자 치즈를 구매해왔으나, 거래 구조에 대한 언론 집중도가 커지자 비계열 통행기업을 섭외하였음

- 공정위 판단

- 비계열 통행기업이 유통단계에 추가되었으나, 치즈 판매처와 피자 업체가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비계열 통행기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중간 유통이윤을 수취하였음

- 비계열사도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가 될 수 있음

4.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소위 “사익편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i)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함),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또는 (ii) 앞의 국내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국내계열회사와 (i)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 사업기회 제공, (iii)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행위

- 성립요건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사업기회 제공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

✓ (i)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ii)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iii)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i)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ii)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위반유형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제공주체가 부담한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TRS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의 개인회사에 자금 조달을 지원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21. 의결 제2018-148호)

- 사실관계

– 특수관계인의 개인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있었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음

– 피심인은 그룹 지주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개인회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에 300억원가량의 담보를 제공함

- 공정위 판단

- 제공객체의 당시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TRS 거래의 가치는 (-)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 위험부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등도 지급받지 않았음
- 이는 탈법적, 우회적 자금 지원에 해당함

사업기회 제공

-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개인회사에 특정 브랜드를 사용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 관련사례

01 호텔 브랜드 관련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9. 9. 9. 의결 제2019-217호)

- 사실관계

- 제공주체는 자신이 개발한 호텔 브랜드를 특수관계인 개인회사가 출원·등록하게 함
- 제공주체는 해당 브랜드를 적용하여 호텔을 시공하여 자신의 자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개인회사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공정위 판단

- 제공주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문 호텔사인 자회사로 하여금 호텔 브랜드를 취득·사용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개인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였음
- 제공주체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자료상으로도 전문 호텔사인 자회사가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02 소극적으로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한 행위가 동일인에 대한 사업기회제공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34382 판결)

- 사실관계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손자회사로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소재 사업 법인의 지분 취득 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동일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분 인수 기회를 일부 포기하였다'고 판단함

- 법원 판단

-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여부는 사업기회의 내용, 계열회사의 사업범위, 기존의 권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함
- 사업기회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도 제공될 수 있으나 그것이 적극적, 직접적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정위 처분을 취소함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호텔과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 관련사례

01 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18. 의결 제2020-262호)

- 사실관계

- 제공주체들은 골프장 회원권 구매, 호텔 대관 거래가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품의 없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 공정위 판단

-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연도별 매출액이 제공객체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12%를 초과하는 점, 특히 주요 거래 대상인 골프장 및 호텔 매출액에서 계열사 거래 비중(약 23.7%)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함

4.3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구분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법 제47조
주체	사업자 일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 (특수관계, 계열회사 요건 불요)	①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②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규제목적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금지
규제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포함) ② 통행세 거래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4.4 제재기준

시정조치	당해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법 제49조)
과징금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40억 원

	이내(법 제50조)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법 제124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 법인, 개인 양벌규정(법 제128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법 제129조)

4.5 FAQ

Q. 완전자회사도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에 해당하나요?
A. 완전자회사도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이고, 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율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다만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 판단 시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으며 최종안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부작위행위도 자금지원행위에 포함되나요?
A.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Q.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현행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해당 가격이 어느 일방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님을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Q.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A.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열회사에게 발주한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발주행위가 부당지원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원객체에게 경제상이익이 제공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물량제공 자체를 경제상 이익의 제공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지원주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낙찰율과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낙찰율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지원객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계열회사로부터 경쟁입찰에 의해서 수주받은 경우의 낙찰율과 계열회사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수주 받은 경우의 낙찰율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등입니다.

둘째,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수의계약한 경우는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부당성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Q&A).

4.6 행동지침 CHECK LIST

- ☐ 거래상대방 선정에 합리적인 고려·비교(예: 경쟁입찰, 시장조사, 견적 제안 요청) 등을 실시하였나요?

- ☐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예: 독보적 기술력, 보안의 필요성 등)를 검토하였나요?

- ☐ 거래상대방으로 계열사를 선정한 경우, 객관적인 거래가격 산정 근거(예: 외부 평가기관 감정결과, 관련 산업협회 표준단가, 비계열사와의 거래 단가 등)를 확보하였나요?

- ☐ 계열회사와 거래 갱신 시 새로이 합리적인 고려·비교를 수행하였나요?

- ☐ 기존 거래에 새로운 단계를 추가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나요?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 계열회사가 역할에 비해 적절한 대가를 수취하고 있나요?

- ☐ 특정 거래의 개시나 갱신이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나요?

- ☐ 계열회사와 거래 규모가 시장 평균 거래규모 대비 높거나,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액·당기순이익이 상대방의 매출액·당기순이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요?

- ☐ 해당 거래로 인해 계열회사의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했나요?

- ☐ 해당 거래로 인해 계열회사의 시장 내 점유율이나 지위가 상승하였나요?

- ☐ 해당 거래로 인해 계열회사의 시장 퇴출이 방지되었나요(예: 자본잠식 해소 등)?

- ☐ 해당 거래 개시로 인해 어느 일방의 기존 거래상대방의 거래가 단절되지는 않았나요?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계열사가 기존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나요?

- ☐ 거래 중간에 계열회사를 추가한 경우, 상대방이 회사와의 직접 거래를 요청한 사실이 없나요?

5. 기업결합의 제한 (법 제9조 내지 제16조)

5.1 기업결합

- 기업결합

-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 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을 규제

5.2 유형

기업결합 수단에 따른 분류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취득 또는 소유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

- **임원겸임**

- 어떤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 임원의 지위를 겸임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적인 단일체를 형성하는 완벽한 형태의 기업결합을 의미함

-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이 되는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모두 포함됨

• **영업의 양수 등**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임차하거나 경영을 수임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행위를 의미함

- 영업이란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하며, 판매권,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통한 기업결합을 의미함

- 특수관계인만 참여하고 그 이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음

결합당사회사 상호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 **수평형 기업결합**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 간의 결합을 의미함

• **수직형 기업결합**

-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 간의 결합을 의미함

• **혼합형 기업결합**

-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의미함

5.3 기업결합신고

- 신고대상

-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상대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됨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 기업 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의미함
- 구체적인 신고대상 유형은 아래와 같음
  - ✓ 주식취득: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단, 계열회사 임원 겸임은 제외
  - ✓ 합병: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하는 경우
  - ✓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단,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는 제외

- 신고시기

- 기업결합 신고는 기업결합을 완료한 후 신고하는 사후신고가 원칙임
- 다만,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참여에 대하여 사전 신고가 요구됨

✓ 대규모회사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
-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기업결합

• 유형별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및 기업결합 유형에 따른 신고기한

구분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기한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단, 경쟁매매를 통한 주식취득 등 예외적 경우에는 사후신고)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납일기일까지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이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신설참여	주식대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대규모회사 여부 불문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5.4 기업결합의 심사

- 기업결합

-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 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을 규제

- 구분

① 간이심사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함

- 간이심사의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 심사하여 별도의 시장조사 없이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아래와 같음

  ✓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기업결합으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또는 관련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② 일반심사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에 해당함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의 판단

✓ 기업결합의 수단이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인 경우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이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함

✓ 지배관계 형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주식취득

-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면 그 자체로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
-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인정됨

② 임원겸임

-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
-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봄
- 그 밖에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의 판단기준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함

③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함

- 관련시장의 획정

✓ 신고된 기업결합이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당해 기업결합과 관련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함

✓ 관련시장은 거래객체,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별로 획정되는데, 제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제품의 가격 및 특성, 제품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인식 및 행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전환의 용이성 등을 주로 고려하게 됨

- 경쟁제한성의 추정

  ✓ 기업결합에 참여한 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의 합계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됨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의 검토

  ✓ 수평형 기업결합

    -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

✓ 수직형 기업결합

-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

✓ 혼합형 기업결합

-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

5.5 제재기준

시정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법 제14조 제1항)
이행강제금	• 시정조치의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결합금액의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법 제16조 제1항) • 임원겸임의 경우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법 제9조 제1항)을 회피하는

	행위(탈법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5조 제1호) • 법인, 개인 양벌규정 (법 제128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법 제129조)
과태료	기업결합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5.6 FAQ

Q. 기업결합이 연초에 발생하여 직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일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기업결합 신고요건이 되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가결산 자료를 바탕을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전 연도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신고의무 유무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그 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직직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신고대상 여부 및 사전-사후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사후에 신고한 경우, 추후 직전 사업연도 확정 후 자산총액 및 매출액 증가로 인하여 미신고 내지 지연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사전 기업결합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금지되는 이행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기업결합 이행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기업결합일'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취득의 경우 '주권의 교부' 또는 '주식대금의 지급',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양수의 대금지급 완납' 등이 기업결합 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기업결합신고를 하여 승인받은 후, 매수인이 임원선임권을 행사하여 임원을 겸임한 경우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임원겸임 내용이 주식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시 제출한 임원겸임계획과 동일한 경우 임원겸임에 대한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기업결합신고 대상인 영업양수에 해당하나요?
A. 단순히 건물을 사고파는 것이라면 경쟁과 무관하므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업을 영위하고 매매대상에 건물과 함께 영업용 장비까지 포함된다면, 건물은 영업용고정자산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건물 일부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는데, 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수한 경우, 임대업을 위한 영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6.재판매가격유지행위(법 제46조)

6.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사업자가 그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P1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통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P2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행위를 말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의 흐름에서 상부에 위치한 사업자와 하부에 위치한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직적 거래제한의 하나로 분류됨

- 성립요건

- 재판매가격유지의 상대방
  - ✓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직접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함.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라 함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다른 사업자를 말함
- 거래가격
  - ✓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함

✓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공급)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함

- 강제성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적용제외

-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 위반유형

•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배상에 관한 서약을 강제하는 경우

- 유통업체들의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
-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 (준)정찰제를 시행하면서 미준수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참조

6.2 제재기준

시정조치	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 등(법 제49조)
과징금	관련매출액 4% 이내 또는 10억 원 이내(법 제50조)

6.3 FAQ

Q. 가격 유지를 권장하거나 가격 유지에 대한 협조요청만을 하였을 뿐인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되나요?
A.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는 미리 정한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하였거나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로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0. 1.

28. 선고 98누14947 판결).

Q. 권장소비자가격을 통보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되나요?

A. 권장소비자가격이 각 거래처가 적정한 소비자가격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거래처가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면 권장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법 제1조)

-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주요개념(법 제2조)

- 약관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 “약관”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에 해당함

  ✓ 그 내용이 조문의 형태를 가질 필요도 없고, 조항의 개수 역시 관계없음

  ✓ 약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함

  ■ 일방성: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정함

  ■ 일반성: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i. “다수”는 약관의 집단적, 반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거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ii. 고객은 특정·불특정 다수를 불문하며, 소비자뿐 아니라 상인도 포함됨

■ 형식성: 일정한 형식에 의한 것이어야 함

■ 사전성: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것이어야 함

iii.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일 필요는 없음

cf) 다른 사업자가 만든 계약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

■ 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을 위해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함

i. 계약내용의 일부만 미리 정해져 있어도 약관에 해당함

cf) 개별적으로 내용을 정한 계약조항은 약관이 아니며, 동일 계약서 내에서도 약관인 조항과 약관이 아닌 조항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자

-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함

• 고객

-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하고,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하는 상대방 모두가 고객이 될 수 있음

• 관련사례

01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영업지침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0241 판결)

• 사실관계

- 보험회사인 피고는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촉계약상 수당의 지급 및 환수는 내부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정하였음

-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피고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서 보험영업지침의 명칭으로 서면으로 마련되어 있음

• 대법원 판단

-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영업지침의 명칭으로 원고들과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피고와 원고 간의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임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약관에 해당함

02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내용이 결정될 것을 예정하고 비워둔 부분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 사실관계

- 어음거래약정서 중 계약기간 또는 거래금액 조항을 계약 시 별도로 기재할 것을 예상하고 비워놓음

• 대법원 판단

- 일반적으로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거래금액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여 두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무기한의 존속기간 및 무한도의 거래한도를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합의에 의해 보충이 예정된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다 하여 약관 형식의 어음거래약정이 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님

2.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법 제3조)

2.1 명시의무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약관내용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자가 지나치게 작은 글자(약 4~6호 포인트)를 사용하는 등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면 고객이 해당 약관조항의 내용을 인식하기가 현저하게 어려우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의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

  ✓ 다만 교부된 약관이 글자 크기가 다소 작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글자체, 줄간격, 띄어쓰기, 장평 등을 고려하여 고객이 인식하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2 설명의무

- 사업자는 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인지가능성을 부여하였다면 고객이 실제 그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함

- 설명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내용'임

- '중요한 내용'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통념상 당해 사항의 인식여부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함

-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 법령사항,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 관련사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중 부가서비스의 제공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 사실관계

- 甲 은행이 항공사와 제휴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중 약관을 변경하여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음
- 이후 이 사건 신용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조건이 변경됨

• 대법원 판단

- ①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가 아시아나 항공과 제휴하여 발급하는 카드로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 위 제휴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그 명칭도 위와 같이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용카드 광고 시 "아시아나-씨티은행 마일리지 대축제, 타사 카드보다 2배 더 많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 드립니다."라고 하여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중요한 내용으로 홍보하였고 그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연회비 외에 제휴서비스 비용을 반영하여 연회비가 다른 신용카드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사실, ② 위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원고들을 비롯하여 고객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서 이 사건 카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관한 약정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됨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약관에 해당함
-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관한 약정이 이 사건 약관 규정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으로 취급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의 내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여부를 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

3. 약관 해석의 원칙(법 제5조)

3.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계약 당사자가 체결한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하고 약관은 이에 반대되지 않는 부분을 한도로 적용됨
- 사업자와 고객이 구두로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객이 개별약정 존재의 입증책임을 부담함
- 개별약정은 계약 체결 시에 성립한 약정, 계약의 변경 및 보충약정을 모두 포함함

3.2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은 사업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문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됨
- 약관은 모든 고객에게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개별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으며 그러한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짐
- 만일 계약자의 특수한 개별적인 사정을 계약에 반영하고 이에 바탕을 두어 해석되기를 원하는 경우 개별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3.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약관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약관을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

3.4 축소해석의 원칙

- 고객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함

• 관련사례

01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잔존물에 대한 현장정리 및 상차비용 이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판결)

- 대법원 판단

-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그 문언에서 특별히 사고현장에서의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으로 국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특별약관을 삽입하면서 별도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항상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의 실제비용으로 제한되고 있어 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주거나 혹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손해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줄 염려가 없게 되어 있는 점에다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해석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을 고려하여 보면, 잔존물에 대한 현장정리 및 상차비용 이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0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 대법원 판단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03 대출보증약관 면책 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나열한 부분이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 대법원 판단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4. 불공정약관

4.1 일반 원칙(법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
- 약관은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함

- “공정성을 잃은”이라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함

-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함

-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사업자가 어떤 특정 조항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가로 고객에게 어떠한 이익이 부여되고 있는가를 비교하여 판단함
  - ✓ 설사 일정한 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사항에 이익이 있어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정당하게 조정된 경우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고객은 약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자가 통상적인 내용이 아닌 의외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특정한 채무가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자의 약관에 의해 다른 것으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함

• 위반유형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다른 장소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선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조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
-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사업자의 허락이나 동의없이는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집단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재판의 승·패소 여부나 패소비율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 일체 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입원환자가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미리 수납한 진료비(1개월분)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임대계약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말기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시키고 그 반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
- 상품의 매수인은 일정기간 무상으로 수리 기타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 고의·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금전소비대차약정에서 보증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금융기관에 도달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도달 후 일정 기간(예: 4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강습을 받을 권리가 강습계약의 본질적인 권리임에도 그것을 교재 제공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상가분양계약에서 상품 교환, 환불,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는 상가 입주자의 고유한 결정사항임에도 판매·관리 일체를 사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사유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한 것을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9. 5. 13. 의결 2019-100호)

- 사실관계

– W사는 서비스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중 하나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였음

- 대법원 판단

–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라는 조항은

포괄적·자의적인 규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02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21. 4. 22. 의결(약) 2021-020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상 “시공사 재선정 등 관련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마련하여 예약의 내용으로 사용함

- 대법원 판단

-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로 공사대금 등 신탁사무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탁자·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위탁자나 수익자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공사 재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4.2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 “면책조항”은 현재 또는 장래에 책임(손해배상, 하자담보 등)을 부담할

자가 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조항을 의미함

- 사업자 측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거나 또는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함

• 위반유형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체육시설물 내에서의 도난 또는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과실, 시설물의 설치·보존의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체육시설의 이용 중 손실, 부상, 사고 및 재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민법상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점 후 화재, 도난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 주차장 사업자가 차량이나 차량내 물건에 대하여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에도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도난, 파손, 분실, 화재 등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가 허위 또는 부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

- 요양원 운영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로 요양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입원기간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이나 카드 도난에 있어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점포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임대인의 건물수리, 개축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편이나 영업상 지장에 대하여 임대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매매목적물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차량 임대기간 중의 사고에 대하여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운행관리자로서의 정비·점검 등의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쌍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업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생긴 위험은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차량 임대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건축물 및 대지의 공급면적이 당초의 계약면적과 달리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으로 민법상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등기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매수인이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주택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임차인이 주택 및 그 내부 일체의 보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매도인의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인정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이용약관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9. 5. 13. 의결 2019-099호)

• 사실관계

- B사는 자신의 이용약관에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등으로 인한 서버다운이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암호화폐 발행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나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또는 정기적인 서버점검 등으로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B사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

• 대법원 판단

-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B사의 약관 조항은 B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B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에 해당함

- 이는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에 해당함

4.3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는 제도를 의미함

- 명칭을 불문하고 약관상 금전지급이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포함됨
-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실제 손해발생 여부, 손해 정도 등의 입증 없이도 예정된 배상액의 지급 청구가 가능함

• 부당히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함

• 위반유형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의 거래관행임에도 총 분양대금의 20~3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는 계약기간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총액이라 할 것이고 위약금은 임대료총액의 10% 수준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에도 임대보증금의 10%를 임차인의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상조서비스 계약에서 회원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차별 납입금의 위약공제율(공제금액÷상품금액×100)이 20%를 초과하여 회원모집 비용을 일부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상의 거래관행(거래대금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을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746,50753 판결)

- 사실관계

- A사는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분양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대법원 판단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함

4.4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 민법,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

- 법에 정한 해제·해지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계약 해제·해지권은 채무불이행 후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불이행 등의 요건 충족시에 발생함이 원칙임

- 단, 해제·해지권 발생 사유로 규정된 조항이 민법규정, 계약 취지 등에 비추어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한 것인 때에는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위반유형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제·해지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아파트 샷시 설치계약에서 사업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고객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의 이행착수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을 계약일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할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경우에는 1개월 경과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36조)함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기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사업자에게 법률상 규정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의 분양계약에서 고객이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사업자가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 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계약 해제·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청산의무를 가중하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나 계약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반환할 경우 그 가액산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로 하는 조항
- 상가분양계약에서 계약 해제시 고객이 이미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스포츠클럽 회원가입계약에서 납입된 입회비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계약 해제·해지 시 사업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조항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
- 회원 자격 탈퇴의 통지를 1개월 이전에 하도록 요구하면서 탈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시기(원상회복의무의 이행기)를 늦추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과도한 장·단기의 계약기간 또는 묵시적 갱신을 허용하는 조항

- 학습지 공급계약이 만료되어도 구독자의 중지요청이 없으면 계속 구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콘도회원약관에서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예: 20년)로 하여 보증금을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의 딜러계약 약관상 계약 해지사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두1110 판결)

- 사실관계

–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에 '고객이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함

- 대법원 판단

– 딜러계약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와 딜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의 개성이 딜러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딜러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동의를 받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딜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로서 필요한 이상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 외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4.5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임
  - 급부는 사업자 자신이 제공해야 할 급부와 고객이 제공해야 할 급부를 모두 포함함
  - 급부의 변경은 급부의 수량, 성질, 이행시기나 장소, 제공방법의 변경 등을 모두 포함함
-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의 일방적 중지 또는 제3자 대행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임
  - 급부의 중지에는 일시적 중지와 영구적 중지가 모두 포함됨

• 위반유형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한도액 축소를 허용하는 조항

-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두지 않으면서 임대인에게만 임대료 임의 조정을 허용한 조항
- 상가의 용도·구조·위치 등 중요 사항을 상대방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의 일방적 중지 또는 제3자 대행을 허용하는 조항

-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 없이 전기 등의 공급을 중단시키고 점포를 폐쇄한다는 조항
- 자동차학원 수강생이 교습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교습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운송인을 다른 운송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4.6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

– 항변권, 상계권 등과 유사하게, 사업자와 고객은 공평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유치권,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도 무효임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동종·유사업종에서의 일반적인 관행, 관계 법령,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임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의미하는데, 즉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효과를 의미함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임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허용요건은 채무불이행, 최고, 고객의 동의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도 최소화되어야 함

• 위반유형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

•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도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

- 고객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고객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은행과의 모든 거래약정 중 일부라도 위반한 때',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등 포괄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의 존속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핵심 요소인 대금 분할납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여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에서 화재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지정하는 보험사와 해당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한 조항

-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수임자를 통해서만 이전등기 하도록 한 조항
- 체육시설 회원가입 계약에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신용카드 회원이 규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최고 없이 관련업체에 임의로 제공하는 조항
- 고객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회원가입신청서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개인의 신용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자신의 스키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까지만 스키시즌권의 양도·양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6. 11. 15. 의결 제2016-315호)

✓ 사실관계

- 스키장 사업자의 약관에 의하면, “시즌권의 양도·양수는 제1항의 양도 가능한 권종을 소지한 시즌권자가 최초구입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발급수수료(30,000원)를 납입 후 가능하며, 양도·양수 가능한 기간은 사용기간(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라고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 시즌권은 기명식 채권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고, 법원도 회원권의 양도·양수기간을 한정된 기간으로 제한한 골프장회원약관이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받게 될 회원의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시즌권 전체 이용기간(스키장 개장 후 약 120일)의 약 절반인 60일간만 양수도를 허용하는바, 이는 시즌권 구매자의 재산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임

02 임대보증금, 체납임금 등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1. 10. 24. 의결 제2011-045호)

✓ 사실관계

-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 [특약사항]
>
> 4)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은 ‘갑’에게 아파트 단지내에 기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경, 손괴 및 신규 시설물의 설치 등 아파트 단지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ㄱ. "갑"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ㄴ. "갑"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 임대사업자가 사회통념이나 법정허용 범위를 초과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해 임차인의 이의제기까지를 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조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상한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주거비나 물가지수, 또는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과 비교할 때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음.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므로 무효임

4.7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고객이 일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음을 들어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무효임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한 수준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임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임

- 계약의 취소나 해제, 채무불이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행의 청구 등은 고객의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에 해당함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형태로 정하는 조항은 무효임

• 위반유형

고객이 일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음을 들어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하는 조항

•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한 수준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고객이 진료예약을 취소·변경하고자 할 경우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거나 예약 당일에 취소·변경하더라도 병원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약 전일 특정시간까지 내원하여 취소·변경 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이 이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 사실관계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대법원 판단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아님

02 은행의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은행이 그 신고된 최종주소로 발송한 서류의 도달을 간주하는 약관 조항이 일정한 조건 하에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6021 판결)

• 사실관계

-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음

• 대법원 판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이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평균적인 일반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적용한다면 이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므로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이 과실 없이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함

03 고객이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고객 등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규정을 제한 해석한 사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 대법원 판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4.8 대리인의 책임 가중(법 제13조)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이 아닌 대리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임

• 위반유형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대리인의 개념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7494 판결)

- 사실관계

- 입찰안내서상 입찰자(대리점)는 한국 내에 소재하는 공급자의 계약상의 전권 대표부 또는 대리점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원고의 입찰에 참가하고, 원고와 공급자간의 모든 연락업무를 수행하며, 공급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원고에게 제출하고, 최종 도착지에서 상품의 검정·검수에 참여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과정에 관여함

- 대법원 판단

-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위 약관법 제13조 소정의 단순한 '계약 체결의 대리인'의 지위를 넘어 '이행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약관규제법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음

4.9 소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당사자 간의 소송을 특정 법원에서만 하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함) 조항은 무효임

- 여기에서의 '소송 제기'는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보전소송 등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을 포함하여 소송 절차상의 일체의 행위가 포함됨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임

-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의미함

• 위반유형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법원(예 : ○○지방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을 외국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 게임이용약관에 사업자가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
- 운송사업자가 자기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있는 때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

– 「약관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 조항을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6. 29. 선고 98마863 판결)

- 사실관계

-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이 존재함

- 대법원 판단

-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 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소송 절차의 진행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02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08. 12. 16. 선고 2007마1328 판결)

-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형사 피의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사용하는 서식을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15조에는 부동문자(불동문자)로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대법원 판단

-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하여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03 공사도급계약에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무효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 5. 6. 의결 (약) 제2021-020호)

- 사실관계

- '제1항에 따라 "乙"은 "乙" 및 "丙"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해제하고 도급 공사비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乙"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공사를 재선정할 수 있으며, "甲", "丙" 및 "丁"은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의제기 금지조항이 존재함

-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공사 재선정 내지 공사도급계약이 신탁 계약의 목적에 반하거나 또는 위탁자·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로

공사대금 등 신탁사무처리 비용이 증가하여 위탁자 내지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탁자 등은 수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의(소송) 제기 금지조항(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5 위반 시 효과

5.1 불공정약관의 효력

- 불공정약관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임

5.2 일부 무효의 특칙(법 제16조)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함.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전체가 무효임

5.3 무효조항에 대한 보충

- 약관 조항이 무효로 되면 그 부분은 민법이나 상법상 일반 법원리가 적용되고, 관습, 임의규정, 조리 등에 의해 보충됨
- 다만, 무효인 약관조항은 그 조항 전체가 무효로 되며 동 조항의 유효를 전제로 유효 부분만 제거하여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음

• 관련사례

01 무효인 약관조항의 유효를 전제로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09다20482 판결)

- 대법원 판단

- 약관규제법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고, 한편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등에 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음

5.4 제재기준

과태료	• 표준약관표지 부정사용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법 제34조)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시정조치	•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사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음(법 제17조의2)
형사처벌	• 위 시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법 제32조) • 법인과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법 제33조)

6 FAQ

Q. 약관과 일반 계약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심사지침에 따른 약관인 경우와 약관이 아닌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 계약서,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 공급 규정, 지방공단의 점포임대차 계약서
- 금융・보험 약관, 운송 약관, 병원이용 약관,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임대차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가맹점 계약서, 용역 경비 계약서, 주차장 이용 약관, 요양원입원 계약서, 체육시설 이용 약관, 학원 이용 약관, 휴대폰 등 통신서비스 약관, 인터넷서비스 약관, 게임 약관
- 여관, 목욕탕 등에 게시되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유일조항

<약관이 아닌 경우>

-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금, 이용료, 수수료, 이익・로열티 배분 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회사의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의 규율조항
-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Q.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A.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계약불이행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이나 피해구제
- ❍ 회사의 정관이나 근로계약
- ❍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조항
- ❍ 약관의 효력이 종료되었거나 변경되어 현재 심사청구 약관조항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

<약관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 ❍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특히 '약관조항' 자체보다는 '행위'가 문제인 경우)
- ❍ 이미 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심사청구된 약관조항의 무효여부가 선결 문제로 된 경우

Q.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계약의 일방인 사업자에 비해 상대방인 고객이 불리한 지위에 처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방지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 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②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③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④ 축소해석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Q. 불공정약관 중 고객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약관의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A.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면서 고객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약관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고,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보장하는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항변권: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서 고객이 보유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업자의 의무를 주장하며 이에 대응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계권: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권리를 고객의 권리와 함께 동일한 액수를 기준으로 소멸하게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인 고객이 해당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효과를 말합니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7 행동지침 CHECK LIST

- ☐ 계약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 ☐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설정하였나요?

-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위약금 조항을 설정하였나요?

- ☐ 고객의 계약 해제·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나요?

- ☐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설정하였나요?

- ☐ 항변권, 상계권 등 고객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나요?

-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나요?

- ☐ 고객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았음을 들어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나요?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도록 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재판관할을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나요?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개요

1.1 목적(법 제1조)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2 주요개념(법 제2조)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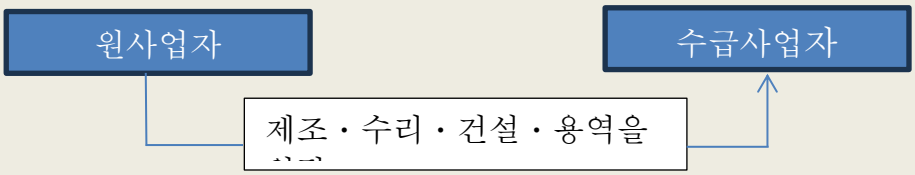

- 원사업자: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자를 말함
- 수급사업자: 위탁받은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하여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함
- 발주자: 원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도급하는 자를 말함

-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수리위탁

-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건설위탁

- 건설사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의 건설업자(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건설업자에 한함, 이하 동일)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1.3 적용대상(법 제2조)

- 하도급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대기업/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	**중소기업** (상소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제외)
중소기업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큰 경우)	→	

•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2조 원 초과 중견기업	→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원칙)

- ①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의미함, 이하 동일)가 아닌 자(대기업, 중견기업)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
- ②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더 적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
  - ✓ 다만, 위탁을 한 중소기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함
    - ■ 제조/수리위탁: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 ■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
    - ■ 용역위탁: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예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위탁을 받은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음
-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로 간주됨

- 적용대상 기간 및 처분시효

-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하도급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음. 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되거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거래가 끝난 날이란 다음과 같음

  ■ 제조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 中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中 역무의 공급위탁: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공사가 완공된 날

  ■ 단,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4조)

- 하도급법 우선 적용(법 제34조)

-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름

•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관계

-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과 규제 내용이 유사하나,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위탁 거래의 범위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보다 더 넓음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위탁일 것을 요구하나,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의 업과 무관한 위탁이어도 적용됨

  ✓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됨

  ✓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됨

2.거래단계별 하도급법상 주요 규제 내용

2.1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

2.1.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 원사업자는 (i)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ii)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완료하여, (iii)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발급하고, (iv)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보존해야 함
  * (i)을 위반 시 불완전 서면교부, (ii)를 위반 시 서면 미교부, (iii)을 위반 시 서면 지연교부, (iv)를 위반 시 서면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함

- 법정 서면기재 사항
  -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의 내용
  - ✓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 사급자재가 있는 경우 그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함

-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의미함(하도급법 제2조 제17항)

- 2026. 8. 11.부터 주요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의 사용 여부와 비용 비중도 확인하여야 함

- 2023. 10. 4.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이 법정 서면기재 사항*에 추가되었으므로, 2023. 10. 4. 이후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법정 서면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하는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요원재료의 유무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지어야 함

  ① 하도급거래기간이 단기(90일)인 경우

  ② 하도급 대금이 소액(1억원 이하)인 경우

  ③ 협력사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④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유형

서면의 발급 및 서류 보존

- 계약 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별도 서면을 사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별도의 날인없이 개별 계약에 해당하는 발주서(PO)를 발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날인이 완료된 서면을 별도로 회신 받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관련사례

01 추가·변경 위탁 시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의결 제2021-037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사내협력사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음

- 피심인은 위 사례들이 수정·추가 공사로서 '단순한 작업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거나 사후 정산합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 빈번하고 경미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음

- 공정위 판단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상 사전서면교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서면교부의무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02 별도의 날인이 없는 작업지시서(발주서; PO)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의결 제2024-008호;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의결 제2024-009호;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9. 의결 제2024-015호)

- 사실관계

- 피심인들은 법정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통해 업무를 지시함

- 공정위 판단

- 기본계약서에 법정사항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에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위 사항들을 규정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법 제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i)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ii)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iii)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iv)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 2023. 10. 4. 이후로 자동 갱신된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하도급연동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쪼개기 계약, 이면 계약 등)

-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은 주요 에너지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함

2.1.2.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 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 됨
- 법정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위반유형

부당특약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해당시 즉시 무효)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해당시 즉시 무효)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해당시 즉시 무효)
- 아래의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 무효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그 밖에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부당특약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사업자 의무 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를 수급사업자가 전보하도록 한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3. 의결 제2024-109호)

- 사실관계

-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손해배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함

• 공정위 판단

-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사업자에게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제62조,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제64조)가 부과되므로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 또한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02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9. 14. 의결 제2023-139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조건,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건, 표준 계약서상 선급금 효력을 부인하는 조건을 설정함

• 공정위 판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고,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원천차단한 조항은 부당함

- 기성금 일부를 하도급법상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부당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도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한 조항은 부당함

2.1.3.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법 제4조 제2항)

-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됨

• 위반유형

부당한 대금 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입찰을 실시하면서 구매목표 금액을 기존 단가 대비 일괄적으로 10% 인하한 행위를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11. 의결 제2020-106호;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단가인하를 위해 사외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전 단가 대비 10%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목표 금액을 제시하여 입찰을 실시함

- 공정위, 법원 판단

- 구매목표금액은 사외협력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사외협력사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입찰통보 공문을 통해 10% 인하된 단가를 적용한 구매목표금액을 제시하였으며, 사외협력사들로서는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조조정 및 매출이 급감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 단가인하 참여로 보기는 어렵고, 부당한 대금 결정에 해당함

02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13. 의결 제2023-227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데, 829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입찰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가격인하 협상 등을 통해 낙찰자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 특히 위 하도급계약 중 317건의 경우 피심인이 설정한 기준금액 이하에서 최저가 입찰가격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 공정위 판단

- 구매팀 담당자는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원인이 '원가변동 리스크의 최소화가 필요했고, 낙찰자 제시금액이 자신들의 이익관점에서 비싸기 때문'이라고 진술함

- 이는 오로지 피심인의 내부사정(수익성 제고, 외주비 절감)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2.2 하도급계약 이행단계

2.2.1.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법 제8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원사업자는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기내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원사업자는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단,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조달 실패 등 자신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한 목적물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생산,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단,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 위반유형

부당위탁취소

-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변경·모델단종·생산계획 변경·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한 사유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들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생산계획 변경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6. 의결 제2022-040호)

- 사실관계

- 다른 부품 거래처의 납품 지연, 고객사의 사정 등으로 생산계획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위탁을 취소함

- 공정위 판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판단함

  ✓ 위탁취소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안테나는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매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는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아래 피심인의 위탁취소 결정을 수용한 것이 아님

02 작업공정 지연, 작업자 기량 미달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18. 1. 15. 의결 제2018-033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작업공정 지연, 작업자의 기량 미달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위탁을 취소함

• 공정위 판단

- 계약서에 도면, 자재와 관련된 공정지연을 피심인의 귀책으로 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판단함

• 위반유형

부당수령거부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하거나,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부진・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공급예정일 내에 납품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 의결 제2015-086호)

- 사실관계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심인 전동기 부품 N2760 1009 품목 7,000개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발주서에 기재된 공급예정일 내에 납품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수령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공정위 판단

- 당해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전체 13개 품목 중 N2760 1009 품목을 제외하고는 신규로 발주할 때에 전월 미입고된 물량을 소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령거부행위는 그동안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방식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임

- N2760 1009 품목에 대해서는 발주 4건 중 3건의 납품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짧게 정하였고, 납품지연 책임에 관한 약정이 사전에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수급사업자가 공급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를 이유로 피심인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례가 없음

02 별개 품목의 하자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3. 16. 의결 제2022-075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제조 위탁(2018년 8월)한 마스크팩 실크 원단 300,000장의 수령을 거부함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은 2018년 6월 제조 위탁한 제품에 개미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별개의 품목인 2018년 8월 제조 위탁한 제품에 대해서 수령을 거부한 점, 2018년 6월 제조 위탁한 제품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개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책임소재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점에서 부당한 수령거부로 판단함

2.2.2. 검사 및 검사 결과 통지 의무(법 제9조)

- 검사의 및 방법

-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 검사결과 통지 의무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단,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한 사유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 위 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위반유형

검사결과 미통지

• 관련사례

01 통지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합격이 간주되며 별도의 서면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두57893, 2022두57909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제조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함

• 대법원 판결

- 원심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검사결과를 통지받지 않더라도

통지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합격된 상태가 되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을 취소함

-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추후 미통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로 불합격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위반이라고 판단함

2.2.3. 부당한 반품 금지(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안 됨 (단,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위반유형

부당반품

- 거래 상대방(고객사)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발주자의 가공불량을 이유로 반품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16. 2. 2. 약식2016-014)

- 피심인이 발주자가 가공과정에서 발생시킨 불량(가공불량)을 이유로 반품한 행위를 부당반품으로 판단한 사례

2.2.5.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법 제10조)

- 부당감액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 됨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감액서면 교부의무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 감액사유와 기준

✓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 감액금액

✓ 공제 등 감액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위반유형

부당대금감액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관련사례

01 물량증가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48443, 2021누58372 판결)

- 사실관계

- 가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원고)가 발주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 양당사자의 합의로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 이러한 물량 증가를 알았더라면 결정하였을 금액'을 고려하여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 법원 판단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사전에 계약서등에 거래물량 증가를 사유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나 감액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

  ✓ 원고는 각각의 감액 내역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뒤에서 보듯이 일부 내역은 원고가 지급한 어음대체결 제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원고의 주장대로 거래물량 증가를 이유로 감액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증가된 거래물량의 구체적인 수치나 감액 액수에 관한 합리적인 추산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02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적용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57485 판결)

- 사실관계

- 휴대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원고)는 수급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가격 인하 협의록 등에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 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함

• 법원 판단

- 금지되는 단가 인하 합의의 소급적용은 원사업자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소급적용에 관한 외형상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옳음

- 원고와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사전에 단가 인하 합의일 이전으로 그 적용일을 소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부당감액에 해당함

03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0누64561 판결)

• 사실관계

- 자동차용 에어컨 및 엔진 냉각시스템을 제조하는 사업자(원고)가 자신의 기술지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

- 원고는 자신의 기술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였고, 수급자들이 절감한 비용 중 원고가 기여한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 판단

-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한 감액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그러한 감액에 동의하였다거나 단순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원고에게 분배되는 금액(감액액)이 원고의 기여 정도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가 하려는 생산성 향상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와 그 이익액의 분배방법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원고의 기여 활동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2.2.6.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금지(법 제12조의3)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됨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 기술자료

- 비밀로 관리되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 1)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

  ✓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 기술자료제공요구서 교부 의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비밀유지의무 또는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기술자료 유용 금지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위반유형

기술자료 제공요구

• 관련사례

01 품질육성 및 자산인수 목록 작성을 위해 기술자료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유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6. 의결 제2022-239호)

• 사실관계

- 자동차 도어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피심인)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총 22건의 도면을 요구함

• 공정위 판단

-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22건의 도면은 승인도 업체에게 업계 관행상 요구하지 않는 단품도면으로, 피심인은 도면수정 지원을 위해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령한 단품도면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품질육성을 위해 도면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요구도면을 요구하여 '보유'할 필요성은 없음

  ✓ 자산인수 목록 작성을 위해서는 도면 보유 여부만을 확인하면 될 뿐 그 실물을 직접 수령할 이유는 없었음

02 납품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품질검증을 위해 도면을 요구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3. 28. 의결 제2022-083호)

• 사실관계

- 농업 및 수산업용 기계와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피심인)는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령함

- 공정위 판단

-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요구하였다고 판단함

  ✓ 최초 납품한지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품질 검증을 위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품질 검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전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벗어남

• 위반유형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하자 보완을 목적으로 제작도면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사실관계

-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발전기용 디젤엔진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에어 컴프레셔 공급처를 변경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 C로부터 받은 소형 에어 컴프레서 제작도면을 새로운 공급처인 E에 전달하여 E로하여금 미흡한 에어 컴프레서 제작 기술을 보완하게 함

- 법원 판단

- 원고가 하자 없는 소형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기 위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C의 도면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함

✓ 원고는 C에게 제작도면 제공을 요구하면서, C의 제작도면이 경쟁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동일 소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

✓ 품질목표 준수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표면적 이류를 내세워 제작도면을 요구하였으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된 쟁점은 에어 컴프레셔 에어탱크 용접 하자 여부 점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었고, 당해 제작도면을 요구하였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02 수급사업자 이원화를 목적으로 승인도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사실관계

- 건설기계와 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하네스 납품업체를 이원화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하네스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 M및 N의 하네스 제작도면(승인도)을 CB에게 제공함

• 법원 판단

- 도면 작성시기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2017. 11. 13. M과 N에게 이 사건 도면의 제공을 요구한 점에서 원고가 설계에 관한 승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업무상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2.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 위반유형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누52596 판결)

- 사실관계

- 토목건축공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계열회사들이 시행한 상가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함

- 법원 판단

- 수급사업자들이 공사에 따른 이윤을 세금 정산 없이 가져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수급사업자들이 이러한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상가 분양 내지 분양권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음

2.2.8.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 됨

- 다음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경영상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 위반유형

부당한 경영간섭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운용하며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 및 지분구성 등을 통제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의결 제2021-037호)

- 사실관계

- 협력사들의 임원 임기, 임원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지분구성 등 협력사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경영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함

  ✓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해당 자리에 부임할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선정하여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보유한 협력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임자의 직책에 부임함

  ✓ 협력사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일부를 타 협력사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분구조를 변경하도록 함

- 법원 판단

- 협력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영사항에 관하여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이 사건

협력사들의 경영을 통제한 것으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함

2.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2.3.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법 제13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함

-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 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 위반유형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
- 하도급대금에 관한 민사상 다툼이 있다는 사실(손해배상 채권 발생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시점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관련사례

01 책임시공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의결 제2021-037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당초 설계보다 물량이 증가한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심인은 책임시공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함

- 공정위, 법원 판단

- 민사법원 판결에 따라 책임시공 약정을 인정할 수 없음

- 수급사업자가 설계에도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시공 약정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02 임의 산정된 손해배상액 채권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28. 의결 제2022-098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출하검사에서 스크래치 불량품을 발견하는 경우 리터치 작업을 진행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였는데, 발주자가 2018년 6월경부터 리터치 작업을 거쳐 납품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였음

- 이에 피심인은 발주자 반품 및 제품 하자가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절반 가량)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 공정위 판단

- ① 하자가 신고인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귀책사유가 신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수입검사를 통과한 이상 하도급대금 채무는 발생하는 점, ② 피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임의 산정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하도급대금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민사상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에서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몰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2.3.2. 선급금 지급 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탁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선급금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즉, (i)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 대상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ii) 발주자가 대상 공사나 품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위반유형

선급금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 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례

01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0. 5. 7. 의결 (약) 제2020-031호)

-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피심인은 자신보다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이 적은

중소기업에 금속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선급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고,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

2.3.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법 제16조) 및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법 제16조의2)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원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됨

• 위반유형

설계변경에 다른 하도급대금 조정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행위
- 협의를 개시하였으나 의사결정권이 없는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협의를 게을리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24. 1. 30. 의결 (약) 제2024-011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나, 수급사업자들에게 증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았음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됨

3. 제재기준

시정조치	대금지급명령, 법 위반행위 중지 명령, 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 등(법 제25조)	
과징금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 이내(법 제25조의3)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불완전 서면 교부 제외	
형사처벌	원사업자 의무사항·금지사항 위반 ※상동	하도급대금 2배 상당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제1항)
	보복조치 금지	3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제2항)
	시정명령 불이행 경영간섭·탈법행위 금지 위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0조 제2항)

4. FAQ

Q. 발주서(PO)에도 날인이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뒤, 세부 물량은 PO를 통해 발주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 경우 기본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법정 기재사항이 대부분 PO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PO가 계약으로 편입되어야 불완전 서면교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뒤, 서명·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하여 업무를 지시한 원사업자들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의결 제2024-008호;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의결 제2024-009호;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9. 의결 제2024-015호).

Q. 당사 날인 후 수급사업자에게 PO를 송부하면 충분한가요?

A. 실무상 원사업자의 날인이 완료된 PO를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PO에 수급사업자의 날인이 완료된 최종본을 별도로 회신받지 않는 경우, 서면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최종본 회신을 요청하시고, 3년간 PO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체결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A. 미연동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i)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원사업자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ii)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하도급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iii)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iv)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자회사 관계임, (v)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미연동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의 경과,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협의의무 준수 또는 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미연동 합의한 사유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따라서,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미연동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사유가 기재된 공문을 수령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해 유의해야할 행위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나요?

A.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i)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연동에 관한 협의 미실시, 회의 개최나 의견 교환 등 실질적 협의 미실시, 권한 있는 책임자의 협의 불참), (ii) 탈법행위(대금이나 기간에 관한 쪼개기 계약 유도,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Q. 부당특약의 효력 유무, 실제 비용 전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 되나요?

A.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상고기각 참조).

Q. 단가가 낮은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Q.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에 응하여야 하나요?

A. 법 제16조의2에 따른 성실한 협의 의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무관하게 부여된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또는 감액)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달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정신청은 기간 내에 성실히 협의에 응할 의무만을 다하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부당한 특약이 있을 경우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부당특약과 관련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25년 10월부터 제3조의4 제2항 중 1호부터 3호까지 특약(1.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2.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요을 부담시키는 약정) 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며 기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을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Q. 주요에너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하도급법 제 2조 17항)
2026년 8월 11일부터 주요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해당 거래애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종류와 비용 비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주요 에너지 비용도 반드시 연동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주요 에너지가 존재하는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가 미연동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정요건에 따라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행동지침 CHECK LIST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법무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나요?

- ☐ 계약서에 법정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였나요?
  - ■ 위탁일, 위탁업무 내역, 납품 등 시기 및 장소
  - ■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기일
  - ■ 사급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 위탁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 계약서, 발주서 등에 양 당사자의 날인이 모두 완료되었나요?

- ☐ 계약서, 발주서, 검사확인서 등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나요?

- ☐ 기존 위탁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친 뒤에 업무를 지시하고 있나요?

- ☐ 최초 공사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추가 비용, 법률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할 비용 등을 협력사에 전가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 ☐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협력업체에 책임을 묻는 조항(예: 일체의 비용, 전적인 책임)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 ☐ 기존 계약 대비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협력업체별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공제한 뒤 거래대금을 결정한 적이 없나요?

☐ 거래 물량을 과장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단가를 낮춘 적이 없나요?

☐ 경쟁입찰을 거쳤음에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없나요?

☐ 계약상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결정하고 있나요?

☐ 하도급대금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계약상 하도급대금 지급시점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이 없나요?

☐ 하도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어음의 만기가 약속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 이전인가요?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시, 하도급업체에게 비율을 준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시, 하도급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비율을 준수하여 대금을 증액하고 있나요?

☐ 협력업체가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였나요?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나요(회의 개최 일정 확보,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담당자의 협의 참여 등)?

- ☐ 하도급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사용여부도 확인하고 있나요?

- ☐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의 비용이 각각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나요?

- ☐ 연동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의 명칭, 기준지표, 조정요건,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나요?

- ☐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나요?

- ☐ 연동제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나요?

- ☐ 미 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나요?

- ☐ 협력업체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은 없나요?

VI.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주요개념(법 제2조)

-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

  ✓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 주문, 결제, 이행 가운데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에 의하는 경우

- 통신판매

- 인터넷, TV, 카탈로그,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강의, 인터넷 게임 등

- 통신판매중개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기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 관련사례

01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광고대행계약 체결의 권유를 받고, 계약체결의 주요 과정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계약은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나62695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자

- . 원고는 2021. 2. 1.경 피고의 직원 E으로부터 광고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받는 등 대화를 나눈 후 2021. 2. 4. 16:53경 피고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계약서를 받아보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함

- 법원 판단

- 원고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권유를 받았고, 광고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및 계약서의 전송 등 계약 체결의 주요 과정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한편 원고도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는 피고가 판매하는 광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실상 소비자의 지위에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는 ‘통신판매’에 해당함

2. 사업자의 의무

2.1 전자문서의 활용(법 제5조)

- 전자서명의 활용과 고지의무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①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효력, ②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출력방법

  ✓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미리 고지하거나, 늦어도 해당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전자서명방법의 자유로운 선택보장의무

-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됨

-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도 안 됨

- 전자문서의 공정한 활용의무

-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된 또는 저장된 정보라면 회원가입・탈퇴 신청양식, 전자우편,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등의 매체 모두 가능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거래와 관련된 확인이나 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다만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로 명백히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전자문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사업자들의 협력의무

-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공정한 활용의무, 거래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제공의무를 지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이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

• 관련사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중 부가서비스의 제공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 사실관계

- 甲 은행이 항공사와 제휴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중 약관을 변경하여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음

- 이후 이 사건 신용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조건이 변경됨

- 대법원 판단

- ①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가 아시아나 항공과 제휴하여 발급하는 카드로서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 위 제휴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그 명칭도 위와 같이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용카드 광고 시 "아시아나-씨티은행 마일리지 대축제, 타사 카드보다 2배 더 많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 드립니다."라고 하여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중요한 내용으로 홍보하였고 그 내용대로 약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연회비 외에 제휴서비스 비용을 반영하여 연회비가 다른 신용카드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사실, ② 위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원고들을 비롯하여 고객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서 이 사건 카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관한 약정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됨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약관에 해당함
-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관한 약정이 이 사건 약관 규정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으로 취급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의 내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여부를 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

2.2 거래기록 보존의무(법 제6조)

- 거래기록 보존의무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과정에서 생성된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함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간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간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 사업자는 보존된 거래기록을 소비자가 쉽게 열람·보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야 함

✓ 사이버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서 거래기록을 열람, 확인, 저장할 수 있게 해야 함

✓ 사이버몰 이외의 방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쉽게 사업자의 거래기록을 열람, 확인, 복사할 수 있게 해야 함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의 거래기록은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소비자의 거래기록과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함

2.3 조작 실수 등 방지 의무(법 제7조)

• 사업자는 소비자가 조작 실수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거래절차를 마련해야 함

<예시>

-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에 화면 또는 팝업화면을 통해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 TV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화주문시 청약의 중요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여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후에 거래의 계속을 문의하여 소비자가 거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묻는 방법
- 재화등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기하는 등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 전화주문시 재화 등의 가격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법

2.4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의무(법8조)

- 정보보안 유지의무

- 전자적 거래대금지급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전자적 거래대금지급방법이란 계좌이체,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선불전자지급, 전자화폐지급, 모바일지급 등이 포함됨
  - ✓ 전자결제업자등이란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결제수단의 발행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등을 말함
-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폰번호, 구입상품 및 거래금액 등의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소비자의 청약에 대한 진정성 확인의무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의 청약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상품의 내용과 종류, 가격, 제공기간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미리 동의표시를 하여 제공하여서는 안 됨

  <예시>

  ✓ 무료 이벤트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유료 월정액자동결제로 전환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되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다만, 무료 이벤트가 유료 월정액자동결제 계약에 부수된 것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시기가 명확하고 소비자가 그 전환 시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벤트 사용 시작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월정액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달 결제되는 가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 및 종류, 상품의 변경된 가격,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통지 및 열람허용 의무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할 때는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팩스 등을 이용하여 즉시 통지하는 것이 원칙

•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고지의무

- 선불결제수단의 발행자는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함

✓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본금의 규모 및 자기자본 현황 등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채무지급보증 범위 포함)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

✓ 반품 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 해당 결제수단의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분쟁해결 협조의무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분쟁의 해결에 협조해야 함

✓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것에 협조해야 함

• 관련사례

01 월정액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를 기존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였으나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5.2 소비자의 청약에 대한 진정성 확인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4. 9. 25. 의결 제2014-206호)

• 사실관계

- S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M 사이트)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바일 무제한' 등 6개 월정액 상품(이하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판매하던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음원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의 가격을 종전보다 최소 35%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이미 2013. 1. 1. 이전부터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이하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는 2013. 7. 1. 부터 적용하기로 함

-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S사는 2013. 7. 1.부터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여 2013. 7월 한 달 동안 총 105,801명의 기존 이용자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총 939,722,000원에 상당하는 상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같이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사실과 내용 및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고지함

- S사는 기존 이용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는 아니함

• 공정위 판단

-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가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행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는 최초 계약

내용에 따른 '종전 가격'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변경된 가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고지 및 고지 확인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에 대한 진정성 확인 의무를 부담함

- 따라서 S사의 위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에 대한 진정성 확인의무의 위반임

2.5 공정한 소비자 정보 수집 및 이용의무(법 제11조)

- 공정한 소비자 정보 수집 및 이용의무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공정하게 하여야 함

  <예시>

  ✓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음

  ✓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안 됨

- 정보 도용에 대한 조치의무

- 사업자의 실수로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이나 피해회복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함

  ✓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원상회복해야 함

✓ 도용에 의한 피해를 회복해야 함

• 관련사례

01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중” 등 답변만을 한 것은 정보 도용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7.1. 선고 2008누26918 판결)

• 사실관계

- 2008년 4월 H사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인 Y사에게 제공한 사건에서, 소비자가 H사에게 한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 확인 및 피해회복 요구에 대해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만을 일관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해 9월(2008.9.8.) H사에게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하나로텔레콤은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 법원 판단

- 법원은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중” 등 답변만을 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법조항의 ‘정보의 도용’이란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함

2.6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법 제12조)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 위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 휴업, 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 관련사례

0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63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을 통하여 판시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과세기간인 2006년 11월, 12월에는 공급대가 합계 4,241,2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를 1역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447,200원(= 4,241,200원 × 6)이며 이는 간이과세 적용기준인 4800만 원22)에 미달함
-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속한 2007년 1월 및 2월 당시의 판매금액도 합계 3,471,448원에 불과하여 위 기준에 미달함
- 다만,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통신판매를 계속했기에, 원심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함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에서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2.7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법 제13조)

- 청약 목적 표시・광고 시 정보제공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및 신고기관을 포함하여야 함

- 상품정보제공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

  ✓ 상품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상품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등 정보

  ✓ 가격 및 기타 추가비용

  ✓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교환, 반품, 보증, 환불 등의 조건 및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의 전송 및 설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약관

✓ 결제대금예치안내

- 판매 제한이 있다면 그 조건

• 미성년자의 취소권 고지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

• 관련사례

01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9. 8. 6. 의결 2019-074호)

• 사실관계

- P사는 2012. 6. 1.부터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고시'라 한다)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치수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하고 제조자,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공정위 판단

-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소재, 치수 등 일부만을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함

02 랜덤박스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7. 9. 1. 의결 2017-292호)

- 공정위 판단

- W사는 2014. 11. 8.부터 2017. 3. 30.까지 W에서 벨트, 향수, 시계 등으로 구성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4) Ⅲ. 1. (4), (18) 및 (19)의 상품정보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함

2.8 청약 확인의무(법 제14조)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함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

<예시>

-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하여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 TV홈쇼핑과 카탈로그 쇼핑의 경우, 전화주문 시 청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그 내용대로 청약절차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방법

2.9 상품공급 관련의무(법 제15조)

- 상품공급에 필요한 조치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함
- 소비자와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상품공급 곤란 시 조치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 확인에 관한 조치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공급 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관련사례

01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사유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한 것을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20. 6. 30. 의결 제2020-157호)

- 사실관계
- W사는 2020. 1. 20. 부터 2020. 1. 29. 까지 4개 사이버몰(ㅇ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가격을 인상하였고, 고가에 체결된 계약 일부에 재화를 공급한 뒤 저가에 체결한 계약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 공정위 판단

- W사가 마스크를 판매한 사이버몰에서는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이후에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w사의 마스크 판매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W사가 품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재화의 공급을 종국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고, W사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았고 해제되지 않은 계약에 재화를 공급한 후인 2020. 1. 31. 시점에도 상당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님
- 따라서 W사의 행위는 상품공급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임

2.10 금지행위 (법 제21조)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법으로 정한 몇 가지 경우 제외)
-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관련사례

01 정기결제형 디지털 음원 서비스 이용권 구매자에게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미고지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22. 의결 2024-016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의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멜론유료서비스약관' 제17조 제6항 에 따라 사용기간 중 자유롭게 '중도해지' 할 수 있었으나, 앱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일반해지만 가능) PCweb에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하면서, 앱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해지신청 과정에서 PCweb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리지 아니 함

-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인정됨

2.10-1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2 등)

- 온라인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특정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온라인 화면 인터페이스 설계를 의미함

- 전자 상거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 정기결재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추가 동의 및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등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첫 화면에 표시하는 행위

  3.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는 행위

4. 선택항목 간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해위
5. 소비자의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하기 위하여 절차르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
6. 소비가 이미 선택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정기 결재 상품의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변경 내용 및 취소·해지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함

온라인 판매 페이지, 앱, 구독 서비스 및 고객 해지 절차를 설계할 때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구매·결재·취소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화면 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함.

2.1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법 제24조)

- 선불결제수단의 발행자,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 서류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음

2.12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의무(법 제24조의2)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공정위는 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3. 제재기준

3.1 제재기준

시정조치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법 제32조)	
과징금	관련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5천만원 이내	
형사처벌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 제40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결제대금예치 표지 허위 사용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2조)
	신원정보·거래조건 거짓정보제공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3.2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시 금지되는 행위(법 제21조의2)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운영하는 경우 특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법 위반이 성립되는 경우

01 정기결제형 디지털 음원 서비스 이용권 구매자에게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미고지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22. 의결 2024-016호)

-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4. FAQ

Q.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무엇인가요?

A. 구매안전서비스의 일종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쇼핑몰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선불결제수단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거래는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 보험의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타 용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서비스 제공 사업자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이용조건 (이용가능 기간・장소, 추가비용 등)
4. 취소・중도해약・해지 조건 및 환불기준
5. 취소・환불방법
6.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5. 행동지침 CHECK LIST

- ☐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였나요?

- ☐ 고객에게 전자서명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나요?

- ☐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나요?

- ☐ 고객이 거래에 관련된 전자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였나요?

- ☐ 거래기록을 정해진 기간동안 보존하고 있나요?

- ☐ 보존한 거래기록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나요?

- ☐ 고객이 조작 실수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거래 내역 확인 절차를 두고 있나요?

- ☐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 ☐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대금 결제창에 고객이 직접 동의표시를 할 수 있나요?

- ☐ 월정액상품 등의 가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를 안내하고, 이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를 직접 체크할 수 있나요?

- ☐ 결제가 완료되었을 때는 이를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나요?

- ☐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 기만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나요?

☐ 고객의 정보가 도용되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인확인이나 피해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였나요?

☐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였나요?

☐ 표시광고를 할 때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표시하였나요?

☐ 고객이 계약을 하기 전, 상상품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품의 명칭, 종류, 및 내용 등 정보, 가격 및 기타 추가비용, 공급방법 및 공금시기, 철회 및 해제, 교환, 반품, 보증, 환불에 대한 사항 등을 고객에게 알렸나요?

☐ 미성년자와 거래시 취소권을 고지하였나요?

☐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그러한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하였나요?

☐ 고객의 구매신청으로부터 7일(선결제의 경우 3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나요?

☐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알렸나요?

☐ 고객에게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지는 않았나요?

☐ 철회나 해지를 막기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 도메인 등을 변경하지는 않았나요?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충분한가요?

☐ 일방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지는 않았나요?

☐ 고객이 구매의사 없음을 밝혔는데도 이를 강요하지는 않았나요?

☐ 고객의 정보를 허락 받은 한도 내에서 이용하였나요?

☐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도록 하지는 않았나요?

☐ 고객이 요청할 때 관련 자료를 전 계약 해제·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나요?

☐ 정기결재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법정 사전 동의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하고 있나요?

☐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 배송비·수수료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적절히 표시하고 있나요?

☐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특정 옵션을 임의로 선택해 놓지는 않았나요?

☐ 소비자가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 소비자가 이미 거절하거나 선택한 사항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Ⅷ.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요

1.1 목적(법 제1조)

-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1.2 주요개념(법 제2조)

- 표시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의미함

- 광고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중 자기나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자기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인터넷,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함

-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는 사업자단체라 함

- 소비자

-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한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함

1.3 적용대상

- 적용대상

-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모든 종류의 표시와 광고에 대하여 적용됨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표시 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은 그 적용이 배제됨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표시 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적용이 배제됨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법은 각각 입법 목적을 달리 하므로 경합하여 적용됨(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아님)

2.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법 제3조)

2.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 예시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참조

- SNS, 블로그 등 후기형 광고에 대해 게시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 및 경제적 이해관계 표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참조

• 관련사례

01 1+1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하는 행위 등을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6. 11. 24. 의결 제2016-326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전단을 통해 “초특가”, “할인”, “다시 없을 구매 기회” 등으로 광고하였으나 상품들의 판매가격은 전단광고 전의 판매가격과 동일하였으며,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하여 기재함

- 공정위 판단

- 광고 전과 비교하여 실제 거래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전에 비해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한정된 기간에만 특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기재한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며, 1+1 행사 관련 상품들의 판매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이 아닌, 종전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재한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됨

2.2 기만적인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예시

-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 등에 영어로 표기함으로써 당해 상품이 마치 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경우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세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서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 관련사례

01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인 것처럼 가장하고 직원이 작성한 추천글·댓글 등을 통해 강의·교재 등을 광고한 행위를 기만적 광고행위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23. 10. 19. 의결 제2023-165호)

- 사실관계

- A사는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A사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A사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 홍보하는 채널로 활용하였으며,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하여 마치 일반 수험생인것처럼 강의 등을 홍보하는 게시글 및 추천 댓글 등을 작성함

- 공정위 판단

-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여 관리, 운영하고 이를 A사 강사, 강의, 교재를 홍보하는 채널 등으로 적극 활용하였음에도 카페 메인화면, 카페 소개, 게시글 및 댓글, 피심인들 직원 등이 사용한 닉네임 등에 A사와의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하였으며, 특히 피심인들의 직원 등이 일반적인 수험생을 빙자하여 작성된 이른바 “자연스러운 홍보글”은 피심인들의 직원이 스스로가 직원임을 밝히고 작성한 글에 비해 홍보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피심인들이 A사와의 관련성을 은폐 또는 누락한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함

2.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법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것이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예시

- TV의 가격을 비교·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을 B사의 것은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 서울~부산 간의 항공요금만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노선에 대한 요금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휘발성이 강해 세탁물에는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자기가 개발한 세탁용제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 관련사례

01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다른 홈쇼핑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동종 제품의 용량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홈쇼핑 가격대비 최다구성"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비교 광고한 행위를 부당한 비교 광고 행위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0. 2. 8. 의결 제2010-025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서 "홈쇼핑 가격대비 최다구성", "홈쇼핑 구성대비 최저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는데,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과 다른 홈쇼핑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동종 제품들의 구성용량은 모두 달랐고, 나아가 A 제품의 판매가격을 단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피심인이 판매한 제품의 판매가격이 가장 높았음

- 공정위 판단

- 제품들의 구성용량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판매가격에 대한 단순 비교는 부당하며, 제품의 판매가격을 단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피심인 제품의 판매가격이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았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비교 광고행위에 해당함

2.4 비방적인 표시·광고

- 비방적인 표시·광고(법 제 3 조 제 1 항 제 4 호)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 예시

- 객관적 근거 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 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 차량결함 등 다양함에도 단순히 정부 교통사고 조사 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 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경우

-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관련사례

01 염기 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 사업자 또는 경쟁 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하여 광고한 행위를 비방적인 광고 행위로 판단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19. 6. 17. 의결 제2019-

127호)

- 사실관계

- 피심인은 '보툴리눔 톡신,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국내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표현으로 보툴 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의 보툴리눔 독소제 제는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하였음

- 공정위 판단

-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는데, 이 때 식약처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 체 염기서열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며,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전체 염기서열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의 보툴리눔 독소제제에 대해 보툴리눔 균주 유전체 염기서열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가짜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비방성이 있다고 인정됨

2.5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 소비자오인성

- 소비자오인성이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함
-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며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음
- 표시·광고의 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인 경우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문제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인 경우에도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정거래저해성

- 공정거래저해성이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의미함
-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공정거래저해성은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음
- 표시·광고의 목적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2.6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

- 소비자오인성

-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광고도 사전에 객관적인 실증자료 확보 필요
-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30 일에서 15 일로 단축
- 실증자료 미 제출 시 해당 광고에 대한 중지명령 가능
- 사업자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3. 제재기준

시정조치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법 제7조 제1항)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9조 제1항)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조)

4. FAQ

Q. 광고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인 경우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A. 광고내용이 설사 부분적으로는 사실(half truth)이지만 광고물의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망성이 있는 광고가 되고 그와 같은 오인성 즉,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 부여하는 인식의 기준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누4219 판결).

Q. 소비자오인성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한가요?

A. 소비자오인성의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00. 4. 5. 선고 99누235 판결)

Q.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73038 판결).

Q.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공정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나요?

A.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족하고, 실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3565 판결)

Q.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종기는 언제인가요?

A.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종기는 그 표시행위가 종료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각 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종료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42391 판결)

5. 행동지침 CHECK LIST

- ☐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부분이 있나요?
-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비교광고를 한 사실이 있나요?
- ☐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채 비교광고를 한 사실이 있나요?
- ☐ 다른 사업자나 경쟁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노출하여 광고한 적이 있나요?
- ☐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된 품질/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한 적이 있나요?
- ☐ 할인판매하면서 허위의 종전 거래가격이나 허위의 시가를 자사 판매가격과 비교 표시·광고한 적이 있나요?
- ☐ 자사제품이 경쟁자의 제품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 ☐ 광고 내용 중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나요?
- ☐ 광고의 전체적, 궁극적 인상에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내용이 있나요?
- ☐ 업종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 해야 하는 사항을 사전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한 적이 있나요?
- ☐ 실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광고(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한 사실이 있나요?

☐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 등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적이 있나요?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재료/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적이 있나요?

☐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음에도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적이 있나요?

☐ 품질, 성능이 일정수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표시·광고한 적이 있나요?